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

Arts Promotion Act in Austria

2005. 8.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

Arts Promotion Act in Austria

연구자 : 박 영 도 (연구위원)

Park, Young-Do

국문 요약

유럽국가에서 가장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법제는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의 방향성 내지 향후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이며, 문화예술이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인 국가이다.

1955년의 오스트리아헌법은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민주주의·공화주의·연방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연방제 국가의 특징으로서 연방과 주의 역할분담이 현재에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에 관해서도 그러한 권한의 소속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연방정부 및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9개주는 독자적 문화적 법제를 가지게 되었다.

1988년의 연방예술진흥법은 연방헌법 제18조제1항이 “모든 국가의 행정은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 의한 문화예술조성활동이 근거법규가 존재하지 않은채 행정상의 재량으로 사실상 실시되었으며, 이 점에 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연방정부의 의도하에 제정되었다. 한편 각주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에서는 진흥의 대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Kultur)”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실제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정에 의한 재량적 시책이나 기존의 조직과 재정을 승인하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진흥을 위한 보다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문화정책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된다면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스트리아의 문화법제는 이른바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는데 모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국가로서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이 국가의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위치하도록 문화예술관련법제도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연방헌법, 문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진흥법, 예술진흥법, 문화국가

Abstract

Austrian post-war cultural policy was mainly prestige-oriented and non-political. It favoured support for federal theatres or festivals and ignored contemporary works of literature, theatre, the visual arts and music. Most of the artists and intellectuals who had been driven away by Nazism during the war were not invited to return.

The post war-attitude toward culture changed with the general European politicization and radicalization of the 1960s and 1970s. The cultural vanguard became a political factor and was employed as a tool to prepare for the upcoming political changes in Austria, i.e. th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of Bruno Kreisky, which promised modernization and reform in all areas including a concept of culture embracing all expressions of life. Moreover, cultural policy was regarded as a variation of social policy.

A package of cultural policy measures of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Arts was adopted in 1975. Its main goals were to improve the cultural habits and education levels of the public and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city-dwellers and the rural population. A culture service (Oks) operated by the Ministry was established to create contact between artists and culture workers on the one hand and schools, adult education establishments, companies and cultural centres on the other. This marked a turning point insofar as it launched a dialogue between governing bodies and artists and art mediators. The decisive step towards the current system of arts promotion was taken up at this time, and was gradually extended and refined over the next 25 year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advisory bodies (incl. boards, juries and commissions and specialized curators). Such bodies were given some decision-making powers in an effort to make the arts support-system more democratic. Intermediary bodies were also established,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and to some extent anchored in private business.

In the 1980s, the country was seized by a veritable culture boom in the sense that more and more events were organised and cultural spending increased approximately seven times the annual amount of the past 25 years. In general, the reason for the increase was due to the support for large-scale events, numerous festivals and big exhibitions.

Towards the end of the 1980s, cultural policy priorities shifted and discussions became focused on issues of cultural sponsorship and privatization. This was at a time when there was a renewed grand coalition between the 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ÖVP)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Ö) an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major political changes of 1989. In 1988 public support for the arts was enshrined in a federal law : the Federal Arts Promotion Act. While public discussion on privatization was initially of marginal significance in the 1980s, it became a hot topic in the latter years of the 1990s especially in fields such as musicals, popular operas and museums which judg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able to raise a greater share of funds in the market than the more avant-garde art forms.

The Austrian Federal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mention art and culture, and cultural legislation at the federal level exists only for the protection of monuments and for broadcasting. Statutory provisions regulating the cultural sector have not been laid down in the comprehensive Cultural Act either, nor have they been systematically collected. Instead, numerous statutory

rules need to be examined in order to cull the explicit or implicit provisions that they contain with respect to the cultural sector.

※ Key Word : Culture, Cultural Act, Arts Promotion Act, Austria, Austria Federal Constitution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I. 개 설	11
1. 국가와 문화의 관계	11
2. 문화국가로서의 오스트리아	15
II.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와 발전	19
1.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의 문화정책	20
2. 1983년이후의 연립정권에 의한 문화정책	23
III.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27
1. 연방헌법상의 규정	27
2. 주헌법상의 규정	35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39
1. 연방의 예술진흥법	39
2. 주의 문화진흥법 개관	55

IV. 결 론 63

◆ 부 록

1. 연방예술진흥기본법 69

2. 주의 문화진흥법 76

I. 개 설

1. 국가와 문화의 관계

유럽에서는 근대국가로 이행한 후 주요 문화기관이나 문화시설을 국유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역사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술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형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유럽의 민주주의적인 국가에서는 문화정책을 전통적인 문화·예술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과는 별도로 사회의 발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국가의 독자성 형성과 연계하는 사고를 발전시켜 왔다. 즉, 사회의 발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문화를(Kultur für alle)”이라는 발상을 전개하여 문화를 사회생활의 질적 향상과 밀접하게 결부된 개념으로서 발전시켰다. 특히, 1960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도시생활의 질적 개선, 도시재생의 기여를 기대하여 도시와 지역(자치단체)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새로운 구상화가 추진되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과정 가운데에서 시민이 다면적으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문화의 보호·장려·조성 등 국가의 적극적인 작용을 문화의 자율적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¹⁾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문화란 교육·학문·예술·종교·세계관 등 인간의 정신활동의 소산이므로, 문화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계는 본래 내용에 관한 중립성의 요청과 국민의 정신적·문화적 가치 및 활동에 대한 간섭의 금지로 이해되었다.²⁾ 즉, 인간의 내면적 정신

1) Hermann Glaser, **Kultur und Kulturpolitik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 Werner Wiedenfeld/Hartmut Zimmermann(Hrsg.), *Deutschland - Handbuch*, München 1989, S.422ff.

2) 국가와 문화의 관계는 ①이원적 모델(Dualistisches Modell)로서 국가와 문화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가에 의한 문화의 보호는 최소한에 그치며 그 이

1. 개 설

활동의 영역과의 불가분한 결합이라는 문화적 활동의 본질에 의거한다면 국가는 문화적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이 대외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이 활동을 내용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개인 또는 단체의 학문적·예술적·종교적 활동을 진흥·조성하는 원조적(unterstützend), 즉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 보조·조성적인 행위만을 할 수 있는데 불과하였다.³⁾

그러나 문화가 단순히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역으로서만 이해된다면 오늘날의 문화 특히, 교육·학문·예술에의 자유로운 향유를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제는 문화의 영역에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조성 등의 조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적 과정속에서 시민이 다면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보호·장려·조성 등 국가의 적극적인 작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 문화의 자율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유지하고 진흥·조성하는 임무가 국가목표의 의미에 있어서 “문화국가(Kulturstaat)”로 이해되는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문화의 자율적인 생활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의 것은 자유로이 방임하는 형태, ②실용적 모델(Utilitaristisches Modell)로서 국가는 스스로 적극적인 문화의 조성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보호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이다. ③관리적 모델(Dirigistisches Modell)로서 국가는 권위주의적으로 문화를 조정하고, 문화에 대한 입장을 한정하는 등 문화파괴적, 문화상실적인 형태이다. ④문화국가적 모델(Kulturstaatliches Modell)로서 이원적 모델과 실용적 모델을 절충한 것으로서 국가가 스스로 문화를 조성하지만 국가와 문화의 관계를 분리된 형식으로 위치하는 모델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Karl Korinek/Richard Potz/Armin Bammer/Wolfgang Wieshaider, **Kulturrecht im Überblick**, Wien 2004, S.24f.

3) Hans Peter Bull, **Die Staatsaufgaben nach dem Grundgesetz**, Kronberg 1977, S.209.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⁴⁾

따라서 문화적 책무를 부담하는 국가로서의 “문화국가”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예술·학문·연구 및 교수의 형성(Bildung)과 자유, 자율성 및 다원성의 보장과 보호이다. 둘째, 문화정책적 중립성(Neutralität) 및 문화정책적 관용(Toleranz)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예술 및 학문의 문화적 진흥·조성(Förderung) 및 적극적 육성(pflege)이다. 셋째, 국가에 의한 모든 문화정책상의 강압적 구속, 문화정책적 획일화의 모든 시도 내지 예술 및 학문에 관하여 그 내용상 결정적 영향을 부여하는 모든 관리·통제의 배제이다. 넷째, 국가에 의한 문화의 진흥조성에 대한 합리적 선별과 차별화의 승인이다.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구조적 특징에서 문화의 자유측면과 문화의 진흥·조성의 측면에 있어서 국가의 임무와 한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시대에서도 문화예술은 그 발전을 위하여 국가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실질적 능력과 전체적 입장에서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제1의 후원자(Schirmherr)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중에는 문화를 진흥·조성하는 국가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에 대하여 문화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문화를 진흥·조성하는 문화행정의 임무의 필연적 귀결로서 박물관, 도서관 등 시설의 설치가 있다.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의 성질과 작용에 적합한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공적인 시설, 이른바 기반시설(Infrastrukturen)이 제공되지 않으면 넓은 영역에 걸친 자유 그리고 독립한 문화활동의 전개는 불가능하므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⁵⁾

4) Thomas Oppermann, **Kulturverwaltungsrecht**, Tübingen 1969, S.8f.

5) Erhard Denninger, **Freiheit der Kunst**, in : Josef Isensee/Paul

I. 개 설

그러나 이들 시설이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때 그것이 이른바 “관리된 문화”가 아니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시설이 예술의 발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예술활동의 발전을 위한 원조적인 보조기능을 행사하거나 또는 창조된 예술작품의 보급 또는 보존에 이바지하는 임무라는 한계가 자각되어야 한다. 또한 장려금, 특정의 예술적 활동에 대한 보조금, 조세부담의 경감 등 다양한 형태에 의한 재정적 급부 등은 공적 수단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공헌하는 물적 및 인적 공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물질적인 원조에 관하여는 개인적 청구권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 의하여 어떠한 보조·지원을 행하는 것이 결정된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불이익취급이 행해지지 않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구체적인 진흥·조성조치에 관하여 국가는 그 재량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결정하며 조성할 가치있는 활동의 인정에 즈음하여 객관적인 선별과 합리적인 차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술의 자유보장에 의거한 예술의 내용에 대한 침해의 한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조성조치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예술의 자율성, 다원성 및 국가의 중립성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진흥·조성이라는 문화행정의 임무로부터 예술의 자유 내지 예술생활에 대한 국가의 능동적인 관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나,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 강하면 필연적으로 국가의 문화행정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그에 비례하여 문화의 자유에 대한 행정적 개입의 기회가 증대된다. 그러나 이 모순의 극복의 단서는 결국 문화의 자율성, 고유의 법칙성, 다원성, 개방성에 대한 국민의 자기억제가 어디까지 관철되는가라는 점으로 귀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자기억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자유보장에 즉응한 국가활동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제시가 요구

Kirchhof (Hrs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IV, Heidelberg 1989, S.866.

되는 것이다.⁶⁾

2. 문화국가로서의 오스트리아

선진국가에서는 문화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법이론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의 정책·행정·권한을 용인하면서 그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문화행정법(Kulturverwaltungsrecht)의 구상”⁷⁾에서부터 이념적인 문화국가를 “문화기본법(Kulturverfassungsrecht)”⁸⁾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는 현상은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 헌법도 헌법적 차원에서는 1980년의 제5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라는 규정을 두었으며, 현행헌법에서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제9조). 이 규정은 문화에 관한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 문화국가건설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헌법규정이전에도 문화국가의 이념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의

6) Dieter Grimm, **Kulturauftrag im staatlichen Gemeinwesen**, VVDStRL H.42, S.4ff.

7) 문화행정법은 독일의 Thomas Oppermann에 의한 연구성과이며, 국가의 활동에 교육, 학술, 예술을 포함하는 문화영역을 상징하는 것에서 비롯한다. 문화행정법은 특수 행정법의 다양한 장소에 분산되어있던 문화관련규정의 존재를 명확히 하면서,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행정의 실태에 언급하여 문화행정에 관한 법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법학이다. 여기에서 실질적인 문화행정을 뒷받침하는 원칙은 예술의 자유의 보장을 대전제로 한 문화의 “보호자”와 자유를 보장하는 “진흥자”로서의 국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T.Oppermann, **Kulturverwaltungsrecht. Gärres Gesellschaft, Staatslexikon Rechts- Wirtschaft- Gesellschaft**, Freiburg 1987, S.774-780.

8) 문화기본법은 국가목적인 문화국가 내지 현실의 행정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문화행정법이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국가차원 및 주차원 나아가 유럽차원에서의 개별 문화관련조항의 규범복합체에 의하여 문화와 국가, 또는 국가목표로서의 다원적 문화의 승인방식을 규명하는 것이 문화기본법이다. 이것은 독일의 법학자인 Peter Häberle에 의한 “도시에 있어서 문화정책 - 헌법적 과제(Kulturpolitik in der Stadt ein Verfassungsauftrag, Heidelberg 1979)”, “연방국가에 있어서 문화기본법(Kulturverfassungsrecht im Bundesstaat, Wien 1980)”, “문화국가성과 문화기본법(Kulturstaatlichkeit und Kulturverfassungsrecht, Wien 1980)”등에서 명확히 되었다.

1. 개 설

이념과 함께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열거되고 있었으나,⁹⁾ 문화국가의 개념이나 내용에 관한 헌법이론적인 연구는 현재에도 그다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그러한 의미에서 유럽국가에서 가장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의 방향성 내지 향후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이며, 문화예술이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인 국가이다. 빛나는 문화유산 그리고 19세기말의 Wien문화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예술, 문화생활은 관광객을 매료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동서의 교류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적으로 발전할 요소를 크게 가지고 있었다. 20세기의 오스트리아는 Habsburger제국의 몰락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주제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제1공화국 시대에는 영토, 경제, 정치, 문화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나아가 1938년부터 1945년은 나치독일에 점령되어 국가로서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1945년부터 1955년은 연합군에 의한 점령의 시기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후 오스트리아가 독자적인 국가로서 걸음을 시작한 것은 1955년이후부터이며, 문화가 정책과제로서 거론된 것은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9)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육(教育)을 받을 권리(權利)는, 첫째 교육(教育)을 통해 개인(個人)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啓發)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文化生活)과 직업생활(職業生活)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社會風土)를 조성하고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憲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文化國家)를 촉진시키고……”라고 하여 문화국가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있다(교육법제96조제1항 위헌확인, 1994.2.24. 93헌마192).

10) 문화국가와 관련한 연구논문으로는 김수갑,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3 ; 동,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법연구 제32집제3호(2004) ; 홍성방, **문화국가원리**, 고시연구 1998.5. ; 류시조, **문화국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법학연구(부산외대) 제3집, 1991.6. ; 이시우, **헌법상 문화국가 개념의 의미 -문화복지 개념의 정립을 위해-**, 사회과학논총(서울여대) 제2집, 1996 등 참조.

1955년의 오스트리아헌법¹¹⁾은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민주주의·공화주의·연방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연방제국가의 특징으로서 연방과 주의 역할분담이 현재에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¹²⁾, 문화에 관해서도 그러한 권한의 소속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연방정부 및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9개주는 독자적 문화적 법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11) 오스트리아는 1920년 10월 1일에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 B-VG)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1929년, 1934년에 헌법개정을 거쳐 제2차대전후 1945년 2월 오스트리아의 독립에 관한 선언을 하여 1920년헌법정신에 의거한 오스트리아공화국의 재건을 추진, 1955년 10월 독립과 포리일체를 이루는 헌법률로서 “오스트리아중립에 관한 1955년 10월 26일의 헌법률”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것은 Oskar Lehner, **Österreichische Verfassungs und Verwaltungsgeschichte**, 3 Aufl., Linz 2002 참조.

12) 오스트리아의 문화관련예산은 2002년 현재 오스트리아전체 GDP의 0.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지출은 연방이 38%, 주차원은 38%, 지방자치단체 27%를 차지하고 있다.

II.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와 발전

오스트리아가 문화·예술관련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이후부터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오스트리아 문화정책은 매우 비정치적이고 소극적이었으며, 국영화된 연방극장(Bundestheater)이나 기존의 페스티발(Salzburger Festspiel 등)¹³⁾에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문학·연극·영화·음악의 동시대적 작품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중에 국외로 도피한 예술가나 지식인의 대부분은 되돌아오지도 않았다.¹⁴⁾

그러나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의 급진화와 정치화 가운데 정부는 문화에 대한 태도를 급속히 변화시켜 나갔다. 특히, 1970년대에 사회당(Sozialistische Partei Österreichs, 현재의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Österreichs)이 정권을 장악하고, 문화와 문화정책을 보다 넓은 문제로서 파악하게 되면서 문화·예술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의 Bruno Kreisky 사회당정권은 정권획득이후 모든 영역에서 근대화과 개혁을 주장하면서 특히, 인간이 생활 가운데 창출하는 모든 것을 문화로 파악하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도입함과 아울러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인간생활전반에 관련하는 사회정책의 하나의 방식으로 파악하여 사회개혁정책의 기초가 되는 문화의 정치적 개념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정부가 관여하여야 할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현대예술에 관하여도 이 사회당정권 성립이후 진흥정책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연방정부내에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3) 대표적인 것으로서 1950년 7월 12일 제정된 “Salzburger음악제기금법(Bundesgesetz vom 12. Juli 1950 über die Errichtung eines Salzburger Festspielfonds, BGBl. Nr. 147-1950)”이 있다.

14)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에 관한 개요는 Council of Europe/ERICarts,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 6th Edition 2005(Austria). p.2 참조. [<http://www.culturalpolicies.net/austria.htm>]

1.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의 문화정책

오스트리아의 문화정책은 문화유산의 보존이나 “진·선·미”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예술의 보급을 주로 하였으나, 특히 1970년대 이후 문화가 정치적 논의의 전면에 부각되면서부터 “문화와 정치의 새로운 밀접한 관계”가 생기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점, 그리고 문화창조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증대한 점이 지적된다. 그리하여 각 정당은 당의 강령에 문화문제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¹⁵⁾

제2차세계대전 이후 사회의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인 시도는 그 초점을 순수한 정치적 목표로부터 약간 후퇴하면서 사회변혁과 사회의 질적향상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문화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70년대 전반은 지금까지의 국민당(Österreichische Volkspartei)의 보수적 일당지배에서 사회당으로 정권이 이양된 시기였으며, 그것은 특히 개혁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특징되는 시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는 문화개념을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혁신적인 것으로 전환시켰으며, 그 의미에서 문화정책에 관해서도 사회개혁적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¹⁶⁾

특히, 대학이나 학술의 세계에서는 그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당시 이미 대학이나 학문의 영역에는 근대화·민주화의 경향은 확산되고 있었다. 문화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가속되기에 이르른 것은 당시 서구사회 전반에 확산된 학생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반권위주의적 학생운동에 의하여 요구된 것은 ①문화적·정치적 자유주의의 추진, ②새로운 사회운동을 위한 기반조성, ③청소년을 독립된 정치요인 및 중요한 정치적 타겟으로 간주, ④시작은 대학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15)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Arts, **Cultural Policy in Austria**, Wien 1992, p.123. [<http://www.culturalpolicies.net/austria.htm>]

16) Council of Europe/ERICarts, a.a.O., p.4.

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1970년대는 두차례의 에너지위기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된 시대였으며, 경제적·과학기술적 경쟁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낙관주의가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경제적 낙관주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주요 정당들은 당시의 사회정책기조를 포함하여 그들의 정치적 원칙을 수정하고 사회국가의 건설을 추진하였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1972년에는 국민당은 당의 정강정책을 담은 “Salzburger Programm”을 발표하여,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는 위임으로서의 정치”를 표방하였다. 또한 자유당(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도 1973년에 “사회정책에 관한 자유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사회당에서도 1978년에 사회정책개혁의 의도를 당의 강령으로 통합하였다. 주요 정당들은 새로운 사회정책개념의 중점을 “비물질적인 복지사회”와 “생활의 질 향상”에 두었다.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을 행복과 질적 향상으로 충족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비전제시는 문화를 하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의식하게 되었고, 각정당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연방정부에서의 문화정책에 관하여는 당시 연방수상이었던 Bruno Kreisky가 1970년에 발표한 최초의 연설에서 문화에 관한 폭넓은 의미를 표명하였다. 그 내용의 중심은 교육제도의 개혁과 조성 그리고 학술 및 예술정책의 진흥이다. 그는 문화정책의 사회정책적 측면에 언급하면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중요한 정치적 측면이며 사회생활의 “장식(Ornament)”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문화의 사회적 개념”은 “집단내에 있어서 개인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며, 특히 이른바 특권계층에 의하여 향유되는 고급문화(High Culture)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사회당출신으로서 연방교육부장관인 Alfred Sino-watz는 1976년에 “문화는 인간화의 사회적 기회”라고 정의하기도 하

II.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와 발전

였다. 이 견해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정책이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생활의 일반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정책을 문화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에 의하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란 사회주의적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복지 및 질의 증대로 향하여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여 끊임없이 진화해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발전이 복지(사회정책)로부터 풍요로운 삶(생활의 물질적·경제적 측면)을 거쳐, 비물질적인 복지(생활을 행복하고 만족해 가는 능력)로 향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사회정책의 깊이 있는 발전으로 인식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개척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한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시 사회당의 문화정책에서는 ①사회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인 문화개념을 채용하고, ②문화정책의 개념을 모든 정책의 원칙으로서 표방하도록 하며, ③양호한 생활을 지향하여 포괄적인 질을 중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회당에 의한 문화정책개념은 구체적으로 1975년의 연방교육예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und Kunst)에 의한 “교육정책의 문화적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 기회균등에의 계속적 노력” 및 “건실한 문화발전”으로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화정책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부터의 전개를 밝혔다.¹⁷⁾ 하나는, “전통적 과제”인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문화재보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육 및 지역간 격차시정에 의한 국민의 문화참가의 향상이다. 이미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주요한 실적으로 자부하였던 당시의 정권은 특히 후자의 문제에 관하여 다음의 사업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수립하였다. 즉, ①동시대(현대)적 예술의 진흥, ②문화유산의 보호, ③지리적 및

17) Karl Gerhard Strassl, **Kulturpolitik des Bundes. Die Kulturpolitische Situation in Österreich im Spannungsfeld zwischen Gestalten und Verwalten**, Wien 2001, S.7f.

사회경제적 문화격차의 시정, ④예술창조의 자유의 보호, ⑤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 및 예술정책에 관한 정보의 증대와 설명책임, ⑥모든 정책 가운데에서의 예술정책의 중요성의 위치부여, ⑦오스트리아의 전통적·국제적 명성을 유지하고 현대 오스트리아에 있어서의 진정한 성과를 대외문화정책으로 확립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①오스트리아의 연방제 시스템에 따른 모든 주에서의 예술진흥, ②다양한 문화기관·단체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실시, ③문화기관·단체에 대한 구조적 분석의 체계화 시행, ④박물관조직 및 구조개혁, ⑤경제성과 효율성을 지향한 연방극장의 재조직화와 주극장 및 언론매체와의 협력, ⑥동시대(현대) 오페라 및 연극의 진흥, ⑦예술가양성체제의 개편, ⑧영화진흥법(Filmförderungsgesetz 1980)의 제정 등의 정책을 정부의 소신표명으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2. 1983년이후의 연립정권에 의한 문화정책

1983년부터는 사회당정권시대의 연방교육부장관이었던 Alfred Sino-watz가 연방수상에 취임하였으나, 1987년까지 자유당과의 연립정권이 성립하면서 정치적 상황은 사회당정권시대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전개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정책 및 문화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및 실천주의적인 사고가 주류가 되어가는 한편 경제적 상황, 정치시스템의 다원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두로 정당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문화이해의 필요성이 점차 희박하게 되었다.

또한 예술과 예술가를 진흥하기 위한 예산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산을 국가에 의한 보조금만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를 다원화할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문화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지향됨과 아울러 국제사회에 있어서 문화발전(Cultural development)의 측면이 중시되

II.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와 발전

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6년의 선거결과 녹색당(Die Grünen)이 의석을 획득하게 되면서, 녹색당은 사회이론에 의거한 문화개념을 표명하고 환경에 배려한 원칙과 가치관을 통하여 사회상황을 변화시키는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그곳에서는 경제적 필요를 우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공존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즉, 오스트리아 헌법상 문화기본권을 구체화하고,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1989년 녹색당은 “예술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소수자의 문화권, 여성의 평등한 지위, 외국인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책, 지성교육, 지역간 문화교류, 지역에 있어서 문화 그리고 민간주도의 지원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정당과는 다른 주장을 가진 정당의 대두는 기존정당의 문화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부여하였다. 특히, 1987년부터의 사회당과 국민당의 대연립정권에서는 국영기업의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정부에 의한 예산배분의 우선순위의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였으며, 단순히 문화정책에 관한 예산이 축소되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부각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회당은 “전망 90(Perspective 90)”을 발표하여 “문화예술조성재편의 틀”에서 기존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민간부문을 기초로한 문화스폰서를 고려에 넣는 한편 나아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국민당은 1970년대부터 교육정책의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던 문화관념을 “모든 의식적으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간단한 도구로부터 좀 더 차원높은 인간의 정신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문화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화정책에 관한 과제를 사회를 분할하는 문화적 격차의 시정에 두었다. 그리고 그 시정을 위하여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활동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이 실제로 내세운 정책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Cultural awareness) 것과 문화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창출하는 어떠한 정책을 행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화기관의 분산화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이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문화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 대신에 조성하거나 향상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국민당도 문화정책에 관한 시각을 변화시켜, 예술문화의 경제적 요소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에 발표한 “문화행동계획(Aktionprogramm Kultur)”에서는 문화활동의 향상, 국민을 문화의 문제로 자각시켜 문화적인 기회균등에 의한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에의 참가를 명확히 하였다. 문화정책의 목적으로서 예술 및 문화발전을 위한 보다 양호한 여건을 촉진하고 세계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의 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스트리아의 예술을 국제적인 가운데 위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Heimat”라는 용어를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로서 강조하고 전통과 현대의 예술문화를 특징적인 것으로 진흥할 필요성을 전면 내세웠던 것이다. 나아가 1990년의 국민당의 문화계획은 예술문화야말로 오스트리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니는 영역임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예술조성에 있어서도 질, 전문성 그리고 국제성의 기준을 채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민간기업으로 이행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기관의 법적 독립성과 민영화를 제기하였다. 오랜 현안사항이었던 연방극장의 민영화도 이러한 정책하에 1998년 연방극장조직법(Bundesgesetz über die Neuorganisation der Bundestheater : Bundestheaterorganisationsgesetz, BThOG, BGBl. I Nr.108/1998)의 제정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후에 살펴보는 연방예술진흥법도 이 사회당과 국민당의 대연립정권 가운데 제정된 것이다.

Ⅲ.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1. 연방헌법상의 규정

(1) 기본권으로서의 예술의 자유에 관한 규정

오스트리아의 헌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방헌법(Bundes- verfassungsgesetz : B-VG)외에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약 250여개의 헌법적 법률(Verfassungsgesetz), 약 500여개의 통상법률(Gesetz) 중 헌법규정(Verfassungsbestimmung) 및 약 220여개의 조약 중 헌법규정이 산재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헌법(Verfassungsrecht)이라 함은 ①1920년에 성립한 연방헌법(Bundes- verfassungsgesetz : B-VG), ②연방헌법 제149조에 의하여 헌법적 차원으로 채택된 헌법률로서 예컨대, “국민의 일반적 권리에 관한 1867년 12월 21일의 국가기본법(Staatsgrundgesetz vom 21.Dezember 1867, über die allgemeinen Rechte der Staatsbürger für die im Reichsrate vertretenen Königreiche und Länder)”, ③연방헌법률로서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중립에 관한 1955년 10월 26일의 연방헌법률(BGBl. Nr.211/1955)”, ④헌법적 수준의 국제조약으로서 예컨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조약(유럽인권조약)”, ⑤통상법률 중의 헌법규정(예컨대, 정당의 임무, 재정 및 선거절차에 관한 1975년 7월 2일의 연방법률 : 정당법) 및 국제조약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¹⁹⁾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B-VG)은 그 조항의 대부분이 내용적으로 볼 때 통치기구에 관련된 것으로서 기본권에

18) Oskar Lehner, a.a.O., S.21.

19) “오스트리아헌법은 비교법적 시야에 있어서 이례적인 법적기술의 결과로서 매우 분산적이고 복잡한 존재이다.” Theo Öhlinger, **Verfassungsrecht**, 5 Aufl., Wien 2003, S.25.

III.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관한 규정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연방헌법 제149조에 의하여 헌법적 차원으로 채택된 헌법률인 “국민의 일반적 권리에 관한 1867년 12월 21일의 국가기본법(Staatsgrundgesetz vom 21.Dezember 1867, über die allgemeinen Rechte der Staatsbürger für die im Reiche vertretenen Königreiche und Länder)”²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필두로 표현의 자유, 출판·미디어의 자유, 검열의 금지, 연구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예술의 자유도 제17조a에서 “예술의 창작, 전달(Vermittlung)²¹⁾ 및 교수는 자유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예술의 자유에 관한 조항은 1982년의 개정에 의하여 기본권의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867년에 제정된 동법의 역사로부터 본다면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성립하게 된 국가기본법 1982년의 개정과정은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진흥의 헌법상의 위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본법에 예술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은 1979년 12월 국민의회(Nationalrat)에서 사회당소속의원이 제출하였으며, 제출당시의 안은 현행 규정보다도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²²⁾

20)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는 주된 헌법률인 국가기본법(Staatsgrundgesetz : StGG)은 1867년, 즉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과 아울러 입헌군주제가 성립한 시기에 제정된 후 그 조항의 대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며, 오늘날의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발생하여 몇차례 다른 헌법률이나 헌법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인권보장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로서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현대에 있어서 국가의 헌법이 구비하여야 할 인권보장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때문에 연방에서는 현상을 개선하여 시대에 상응하는 인권보장규정을 체계적으로 구비한 새로운 헌법전의 편찬작업을 수차례 걸쳐 시도하고 있다.

21) Vermittlung라는 의미는 창작된 예술작품과 그 예술작품을 향수하는 자와의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악고기나 실연작품의 실연은 물론 출판물(서적, 음악용 CD, DVD 등)의 발행, 방송·통신, 흥행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22) Heinrich Neisser, **Die verfassungsrechtliche Garantie der Kunstfrei-**

구체적으로는 “①예술은 자유이다.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 및 진흥을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예술을 창작하고 실연하며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③예술작품 또는 예술적인 성과에 관하여 저작자인 지위에 유래하는 권리 기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국민의회의 헌법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1980년까지 거의 2년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위원회에서의 심의에서는 예술의 자유에 관하여 개인이 자유로이 예술상의 창작, 전달 또는 감상과 관련한 활동을 행하는 것이 공권력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으며, 만약 방해받는 경우에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서 소송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권적 기본적(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위 개정안의 ③에 규정된 저작권의 권리보장에 관하여는 재산권의 불가침을 규정한 국가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보장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여, 저작권보호법제도 정비되고 있는 시점에서²³⁾ 새로운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삭제되었다.

심의에서 특히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는 개정안 ①의 예술진흥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 개정안의 규정을 보면 예술진흥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은 다양한 차원의 정부(연방, 주, 자치단체 등)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국가기본법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예술에 관련한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 참가하려는 개인을 대상으로 당해 예술활동에의 참가 등이 가능하도록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급부청구권)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heit, Österreichische Juristen Zeitung, 1983, S.1ff.

23)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1936년에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BGBl. Nr. 111/1936)이 제정되고 있었으며, 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가입하였다.

III.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이 점에 관하여 국민당 및 자유당을 대표하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개정안중 예술진흥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다. 즉, ①지금까지의 국가기본법등에 규정되어 온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이 전부 자유권(공권력에 개입에 대한 방어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온 점²⁴⁾을 생각하면, 헌법상의 인권보장규정 전체의 재검토 및 재편을 수반하는 이 조항 하나인 사회권(급부청구권)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헌법상의 인권보장 규정과 정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이러한 급부청구권이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상 인정되는 결과로서 연방, 주, 자치단체 등 다양한 차원의 정부에 의하여 이미 사실상 구축되어온 예술진흥의 시스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다. ③예술의 “진흥”,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도, 널리 공유되고 있는 견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국가기본법중에 “진흥(Förderung)”과 관련된 규정을 두는 경우에 다른 분야에서의 “진흥(조성)”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이다.²⁵⁾

또한 소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각주에 대하여 개정안중의 예술진흥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표명의 기회를 부여한 결과, 모든 주가 이를 반대하였다.²⁶⁾ 주정부는 항상 주의 자치권을 강력하게 지향

24) 국가기본법을 필두로하는 현행 오스트리아연방헌법을 구성하는 법원중의 인권보장 규정은 전부 고전적인 자유권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25) Heinrich Neisser, a.a.O., S.4.

26) 이 규정을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국가기본법에 편입하게 된다면 각주에서도 예술진흥을 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되었으므로 그 경우에 각주 및 자치단체의 자치권과의 관계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또한 각주에서는 현행 국가기본법이 보장하는 인권에 관하여 전부가 자유권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개정안중 예술진흥규정과 같은 급부청구권으로서의 사회권이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einrich Neisser, a.a.O., S.9.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의 인권보장규정 중에 예술진흥과 같은 규정을 둔다면 그전에 자유권만으로 구성된 현행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중에 인권보장 규정의 체계를 총체로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권을 편입한 새로운 인권보장 규정의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하고 있으므로 문화에 관한 분야에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일종의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소위원회에서의 심의완료까지는 예술진흥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대로 편입하려는 사회당소속위원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당, 자유당소속위원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다음의 2개항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국민의회의 헌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즉, 제1항은 현행 국가기본법 제17a조의 규정과 같이 “예술의 창작, 전달 및 교수는 자유이다”라고 하였으며, 제2항은 “연방, 주 또는 자치단체(Gemeinde)에 의하여 예술상의 창작에 대한 진흥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예술상의 창작의 다양성 및 그 유지에 관하여도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수정안은 1982년 1월 29일 헌법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제1항에 관하여는 전원일치로, 제2항에 관하여는 국민당 및 자유당이 반대하고 사회당이 찬성하여 각각 가결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국민의회의 표결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수정안 제2항에 관하여는 헌법위원회에서의 의결시와 마찬가지로 국민당 및 자유당이 반대하여 오스트리아 연방헌법개정에 필요한 유효투표수를 획득하지 못하여 국가기본법에 삽입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수정안 제1항만이 국가기본법 제17조a에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국가기본법 가운데 예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보장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기본법 제17조a의 규정은 제정당시의 경과로부터 보는 경우 명백하게 고전적인 자유권의 규정이며, 국민이 예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데 즈음하여 정부에 대하여 진흥·조성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회권보장규정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²⁷⁾

지적도 있었다.

27) Theo Öhlinger, a.a.O., S.390. 국가기본법 제17조a에서 예술의 자유의 보장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으나 예술진흥에 관한 사회적(급부청구권)에 관해서는 기본권으

III.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2)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권한배분에 관한 규정

국가기본법 제17조a의 규정외에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법원 가운데 존재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연방헌법(B-VG)상 연방과 주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한 권한배분을 규정한 권한배분규정이 있다. 연방헌법에서는 연방과 주의 입법 및 집행에 관한 권한배분의 방식으로서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①입법 및 집행의 권한이 전부 연방에 속하는 사항, ②입법의 권한은 연방에 속하고 집행의 권한은 주에 속하는 사항, ③원칙적인 것과 관련한 입법의 권한은 연방에 속하고, 시행법과 관련한 권한 및 집행의 권한이 주에 속하는 사항, ④입법 및 집행의 권한이 주에 전속하는 사항 등이다.

이 중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이 전부 연방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연방헌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제13호에서 “학술 및 전문적인 목적을 위한 문서관과 도서관서비스”, “예술 및 학술에 관한 수집 및 시설과 관련한 사무”, “건축관련사항을 제외한 연방극장²⁸⁾과 관련한 사항”,

로서 편입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예술의 자유에 관한 규정이 고전적 자유권에 그친다면 동법개정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헌법상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 커다란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고전적 자유권으로서의 인권보장에 관한 한 국가기본법 제17조a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 예술활동의 자유는 동법 제13조제1항 및 유럽인권조약(Europä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제10조에 규정하는 “의견표명의 자유”에 의하여, 나아가서는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출판등의 자유를 보장한 “잠정적 국민의회에 의한 1918년 10월 30일의 결의(Beschluß der Provisorischen Nationalversammlung vom 30. Oktober 1918, StBl. Nr.3)”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점에 관하여는 학설 및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Heinrich Neisser, a.a.O., S.4f.

28) 오스트리아에서는 1971년에 연방이 설치하는 극장의 조직적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국립오페라(Staatsoper), 국민오페라(Volksoper), 시민극장(Burgtheater), 아카데미극장(Akademietheater)의 4개 극장이 오스트리아극장연맹(Bundestheaterverband)으로 지칭되는 연방정부의 기관의 관할에 두었다. 그 후 1980년대후반부터 이들 극장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생기는 운영, 재정등에 있어서 각종 계약을 회피하고 그 한층 자주적인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설치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1998년에 연방극장조직법(Bundestheaterorganisationsgesetz, BGBl. Nr.108/1998)이 제정되어 동

“기념물보호”, “예배에 관련한 사항”, “특정주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공익법인 또는 기금과 관련한 제도”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동 제6호에서는 저작권, 출판 등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사항에 관하여는 연방이 전속적으로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예술진흥에 관한 권한의 귀속을 명확히 정하는 규정은 연방헌법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법원 가운데에는 없다.

이에 대하여 주는 다음의 영역에 관하여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①구시가지 및 경관보호, ②주의 신탁 및 기금, ③극장, 영화, 음악 및 영화상영 등을 포함한 기타 개최, ④전통적 관습, 민속예술, 민속무용, 민속극, 민속의상, 지역습관 및 관습의 보호, 육성 및 진흥, ⑤연방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등이다. 그리고 연방 및 주의 경합적 영역으로서 교육과 성인교육분야, 나아가서는 교육시스템전반에 관한 분야 등이 있다.

한편 연방헌법 제15조제1항은 연방헌법이 명문으로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을 연방에게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주의 고유한 권한으로 유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국가기본법(StGG) 제17조a의 규정에서 연방의 예술진흥에 관련한 권한 또는 의무를 파악하기에는 곤란하며, 또한 연방헌법 기타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을 구성하는 법규범 가운데에도 명문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연방의 권한에 귀속하는 규정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연방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은 주에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극장은 유한회사(GmbH)로서의 조직형태를 취하게 되어, 지주회사인 “연방극장 Holding(Der Bundestheater-Holding GmbH) 및 그 4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들 지주회사 및 4개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연방이 100%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방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자회사중 “극장서비스“(티켓판매등의 업무를 수행)에 대해서만 2004년 9월 1일 이후 자본총액의 49%까지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연방으로부터 제3자에게 지분이 양도되고 있다.

29) 이 점에 관하여 문화정책에 관하여는 연방헌법 제10조에 특히 규정되어 있는 연방

III.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또한 문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각주에게 우선적 권한이 있다는 주의 문화고권(Kulturhoheit der Länder)관념은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다.³⁰⁾

(3) 연방의 문화·예술정책에의 관여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현상을 보게되면 헌법규정의 해석대로 권한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문화”라는 개념은 매우 폭넓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 문화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³¹⁾ 법적개념으로

극장, 연방박물관, 기념물보호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연방에게는 권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각주에 모든 권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Tomslav Car/Franz Otto Hofecker/Harald Gardos,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in: Cultural Policy in Austria, Culturelink(Network of Networks for Research and Cooperation in Cultural Development), Zagreb, Croatia 1996.

30) 독일에 있어서 문화행정에 관한 권한구조를 고찰하는 경우에 주(Land)의 문화고권(Kulturhoheit)이 출발점이 된다. 주의 문화고권이란 문화적 영역, 특히 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제도 나아가서는 라디오방송국 및 TV국의 영역에 대하여 주가 입법권 및 행정에 관한 제1차적 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문화고권”이라는 용어는 기본법상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즉, 문화고권이라는 용어에서 “고권”이라는 용어는 문화정책적인 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적인 강제권한으로서 활동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주의 문화고권이라는 용어는 주가 처음부터 문화영역의 모든 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는 오해를 주며 또한 문화영역에 관한 주의 권한의 현실은 다르다는 점 등이다 (Werner Maihofer, **Kulturelle Aufgaben des modernen Staates**, in Ernst Benda/Werner Maihofer/Hans Jochen Vogel(Hrsg.),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rlin 1983, S.983f).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한구조의 문제로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입법은 연방의 입법권한이 예정되는 약간의 대상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는 주의 사항이며, 문화행정에 관하여는 행정일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가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의 “주의 문화고권”으로 이해한다(Theodor Maunz/Reinhold Zippelius, **Deutsches Staatsrecht**, 26 Aufl., München 1985, S.216f).

31) 이 점에 관하여는 다수의 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다. Bela Rasky/Edith M. Wolf = Perez, **Kulturpolitik und Kulturadministration in Europa**, 42 Einblicke, Wien 1995, S.125. Council of Europe/ERICarts, **Cultural policies in Europe. A Compendium of Basic Facts and Trends 2001, country profiles, Austria**, Bonn 2001.

서의 “문화”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는 일면이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 문화가 지닌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문화정책을 광의로 파악,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위치하는 견해(1970년대의 사회당정권)도 나타난다. 문화정책이 사회정책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견해가 강조되면 문화정책에 관한 법적 권한의 소재에 관하여는 예컨대, 주의 문화고권의 개념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실제로 연방정부는 연방예술진흥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문화·예술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진흥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재량으로 조성활동 기타 관여를 행하였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방의 예술진흥법이 성립된 현재에도 예술진흥에 관하여 연방이 거두고 있는 역할은 각주에 비교하여 무시할 수 없다.³²⁾

2. 주헌법상의 규정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문화에 관하여는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는 문화에 관한 명확한 권한의 소속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문화의 법적개념도 불명확하여 연방이 문화행정의 분야에서 소관사무를 확대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서는 자신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에 처하였다. 이 때문에 주에서는 권한축소에 이르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헌법에 문화의 정의규정을 두는 한편 문화에 관한 권한이 주에 속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우선 각주는 문화에의 권한귀속을 둘러싸고 연방에 우선하여 권한의 소속을 선언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서

32) EU에 있어서 문화정책을 해설한 자료에서는 오스트리아 문화정책에 관하여 연방과 주가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예술행정에 관련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실상을 분석하여 연방과 각주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amela Sticht, *Culture européenne ou Europe des cultures? Les enjeux actuels de la politique culturelle en Europe*, L'Harmattan, Paris, 2000, p.72.

Ⅲ.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각주에서는 주헌법에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나아가 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문화행정에 관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 문화정책의 원칙과 목적을 밝힌다는 모델을 만들었으며 Tirol주, Vorarlberg주, Niederösterreich주 그리고 Burgenland주 등에서 그 주헌법에서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 Niederösterreich주 헌법(1979년)에서는 주의 행위의 목적 및 원칙을 규정한 제4조제2호에서 동 주가 그 영역내에서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주내의 개별 자치단체 및 지역(einzelnen Gemeinden und Regionen)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조건을 열거하고, 나아가 이러한 제반조건에 배려하는 때 경제면, 사회면 및 문화면에서의 요망으로서 수량적인 파악이 가능한 것(abschätzbaren)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조제5호에서는 문화·예술, 학술, 교육 및 향토의 보전(Kunst und Kultur, Wissenschaft, Bildung und Heimatpflege)에 관하여 그 자유 및 자주성(Freiheit und Unabhängigkeit)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동 주가 이를 진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³⁾

(2) Tirol주 헌법(1989년)의 전문에서는 주의 입법부 및 행정부가 수호하여야 할 최고의 의무를 가지는 대상의 하나로서 주의 정신적 및 문화적 일체성을 지적하고, 제7조제2항에서는 주에 상응하는 질서있는 주전체의 발전(Landesbewohner entsprechende Gesamtentwicklung des Lande)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제면, 사회면 및 문화면에 있어서 주민의 요망에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Tirol주 헌법에서는 제10조에서 문화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을 두어, 학술, 예술 및 향토의 보전과 교육에 의한 습득을 주가 진흥하도록 하는 한편(제1항), 문화적인 생활의 자유(Freiheit des kulturellen Lebens)를 주가 존중함과 아울러 당해문화의 다양성(Vielfalt)을

33) <http://www.ris.bka.gv.at/lr-niederoesterreich/>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항).³⁴⁾

(3) Oberösterreich주 헌법(1991년)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가 책무를 가지는 사항의 하나로서 “주전체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여기에서 “문화적 발전(kulturellen Entwicklung)”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경제, 사회, 건강위생 및 문화에 관한 요망에 관하여 특히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배려를 행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주가 학술, 교육, 예술 및 스포츠의 장려와 문화적인 발전 및 아이덴티티(특히 언어를 포함하여)를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문화적 생활의 자유, 자주성 및 다양성을 배려하고 주민의 문화적 생활에의 참가와 기여(Teilnahme und Mitwirkung eines jeden am kulturellen Leben)를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⁵⁾

(4) Salzburg주 헌법(1999년)에서는 제9조에서 “주전체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주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발전”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경제, 사회, 건강위생 및 문화에 관한 요망에 관하여 특히,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künftige Generationen)을 자각하면서 배려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후단에서는 위의 취지를 받아 주의 행위의 책임 및 원칙으로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가능한 최상의 교육제도의 존립, 학술의 더 나은 발전, 예술 및 문화와 그 자유, 자주성 및 다양성의 존중, 보존할 가치있는 문화재의 보호(Bewahrung erhaltenswerter Kulturwerte), 교육 및 문화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자가 그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³⁶⁾

34) <http://www.ris.bka.gv.at/lr-tirol/>

35) <http://www.ris.bka.gv.at/lr-oberoesterreich/>

36) <http://www.ris.bka.gv.at/lr-salzburg/>

Ⅲ.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5) Vorarlberg주 헌법(1999년 및 2000년)에서는 제9조에서 위의 Oberösterreich주헌법 제14조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가 “학술, 교육, 예술의 장려 및 향토의 보전에 노력”함과 아울러 “문화적 생활의 자유, 자주성 및 다양성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에 참가하는 권리에 유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³⁷⁾

각주의 헌법 가운데 문화관련조항은 상호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것은 주헌법에 문화관련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어서 다른 주의 헌법상의 동취지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선례로 참조하면서 조문을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37) <http://www.ris.bka.gv.at/lr-vorarlberg/>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1. 연방의 예술진흥법

(1) 성립배경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회당은 1970년의 정권획득이후 인간이 생활 가운데 창출하는 모든 것을 문화로 파악하는 광의의 문화개념을 도입함과 아울러 문화정책에 관해서도 인간생활전반에 관련한 사회정책의 하나로서 파악하였다. 예술진흥시스템이 사실상 창출된 것도 1970년의 사회당정권하에서 비롯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민주적인 예술정책결정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조직외에 문화정책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사회당정권은 문화정책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보호와 아울러 교육과 지역간의 격차의 시정으로 국민의 문화에의 참여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화와 문화정책에 관한 인식은 당파를 초월하여 국민당외에 다른 정당의 정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연방예술진흥법(Kunstförderungsgesetz)³⁸⁾이 1988년 사회당과 국민당의 연립정권하에서 제정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연방이 예술진흥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양대정당간에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예컨대 사적 부문의 문화·예술조성에의 참여촉진에 의한 재정으로부터의 지출삭감등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도 법률의 성립을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방헌법 제18조제1항이 “모든 국가의 행정은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연방법의 제정이전부터 연방정부에 의한 조성활동이

38) 법률의 정식명은 “연방의 자금을 의한 예술진흥에 관한 1988년 2월 25일의 연방 법률(Bundesgesetz vom 25. Feber 1988 über die Förderung der Kunst aus Bundesmitteln)”이다.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근거법규가 존재하지 않은채 행정상의 재량으로 사실상 실시되었으며, 이 점에 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연방정부의 의도도 예술진흥법 제정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의 연방법으로서 예술진흥법의 제정이전에도 입법례가 있었으며, 1950년에는 연방예술진흥기여금법(Kunstförderungsbeitragsgesetz, 1981년 전문개정)이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었다. 이 법률은 예술진흥을 위한 일종의 목적세를 규정한 것으로서 방송수신계약자에 부과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이 법률에 의하여 예술문화에 관한 자금을 확보하였다. 이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50년이며, 방송수신계약자(Rundfunkteilnehmer)에게 1개월의 수신료에 어느정도의 추가요금을 추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이를 Kulturscilling이라 한다). 그리고 연방차원에서는 이 자금은 연방교육부(Bundesminister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에 의하여 예술에의 조성에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 이 추가요금제도는 거의 모든 주에서 도입되어 있으며, 자금은 문화관련에 특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당초에는 이 추가요금은 수신료 1년분의 1개월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으나, 현재 방송수신료의 최대 15%정도로 되어 있다.³⁹⁾ 이 추가요금은 일단 우편·통신행정을 통하여 징수되어 개별 공공단체에 분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영화산업의 융성에 의하여 이른바 실연예술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도입된 제도이며, 이들 자금은 예술문화진흥을 위한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여 연방은 예술진흥의 재원확보에 관해서는 법적 구조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비하였던

39) 현행 연방예술진흥기여금법(2001년 개정)에서는 방송요금법(Rundfunkgebühren-gesetz, BGBl. I Nr.159/1999)에 의한 방송가입자가 지불할 요금에 월 0.48EU를 징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케이블방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신가입자에게 월 0.25EU를 징수하며,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인공위성방송을 송출하는 자에게는 수신기의 판매 또는 임대시에 1회에 한하여 8.72EU의 요금을 각각 징수하여 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것이다.⁴⁰⁾

(2) 주요특징

① 예술과 문화의 관계

후술하는 것처럼 각주에서는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에서는 진흥의 대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Kultur)”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연방예술진흥법에서는 진흥의 대상을 “예술(Kunst)”에 한정하여 주의 권한에 비하여 연방의 권한을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및 “예술”의 개념에 관하여 연방전역에서 공통된 이해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연방의 예술진흥법 중에 “예술” 및 “문화”의 정의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진흥대상으로서의 “예술”과 “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볼 때 연방법과 주법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⁴¹⁾

40)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주요한 연방법으로서의 잘츠부르크음악제기금법(Bundesgesetz vom 12.Juli 1950 über die Errichtung eines Salzburger Festspielfonds, BGBl. Nr.147-1950), 연방영화진흥법(Bundesgesetz vom 25.November 1980 über die Förderung des österreichischen Films, BGBl. Nr.557-1980), 연방예술가사회보험법(Bundes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nds zur Förderung der Beiträge der selbständigen Künstler zur gesetzlichen Sozialversicherung, BGBl. I Nr.131-2000) 등이 있다.

41) “예술”개념의 법적인 해석의 점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기본법 제17조a의 규정중에 “예술”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다소 참고가 된다. 당해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예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개념정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이 자유권보장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라는 기본권보장이 미치는 범위확정의 문제가 된다. Robert Walter/Heinz Mayer, **Grundriß des österreichischen Bundesverfassungsrechts**, 9 Aufl., Wien 2000, S.614. 예를 들면, 국가기본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동법중에 제17조a의 규정을 신설한 때의 국민의회의 헌법위원회에 의한 심의보고서에서는 법적으로 “예술”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예술”인가의 여부의 판단의 지표가 되는 요건의 특징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언급되어 있다(Esther M. Pecht, **Staatliche Kulturförderung contra Beihilfenverbot. Die Kompetenzverteilung im Kulturbereich in der EG und in Österreich**, Innsbruck-Wien 1999, S.39). 한편으로 소송등의 개별구체적인 경우에 “예술”의 정의가 다루어지는 때의 고찰방법으로서 “어떠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따라서 연방예술진흥법에서는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의 범주를 일정정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제2조)을 두고 있다. 한편 각주의 문화진흥법이 대상으로 하는 “문화”개념은 연방의 예술진흥법이 대상으로 하는 예술과 비교하여 한층 넓고, 다수의 주의 문화진흥법에서는 연방의 예술진흥법보다 다양한 “문화”의 범주를 진흥대상으로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제정된 Nieder-österreich주(1996년)와 구법에 대신하여 신법을 제정한 Salzburg주(1997년, 구법은 1980년 제정)의 문화진흥법에서는 한층 광범한 “문화”를 취급하는 것을 의도하여 진흥대상이 되는 문화개념을 추상성이 높은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연방과 주의 역할분담

연방의 예술진흥법은 각주의 문화진흥법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다. 즉, 예술의 성과 또는 기획이 진흥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 우선 1)특정지역만의 이해를 초월한 관심에 의거하는 것이 열거되고(제2조제2항), 2)당해 예술의 성과 또는 기획이 특정지역만의 이해를 초월한 관심에 의거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성과·기획이 혁신적인 본질을 가지며 모범례로서의 역할을 거두는데 상응하는 것일 것 또는 3)당해성과·기획이 통일

한 전형적인 예술의 개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몇가지의 요건을 기초로 특정의 대상이 “예술”인가의 여부의 판단을 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기도 한다(Th.Öhlinger, a.a.O., S.389). 이 견해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예술의 개념”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제요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상응하여 가변적인 것으로서 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 요건을 추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술의 개념”의 지표가 되는 요건으로서 판례는 문제가 되는 대상에 “진지한 예술상의 탐구”가 인정되는가의 여부라는 기준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예술”이란 “문화”의 하나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Esther M. Pecht, a.a.O., S.39). 이 견해에 의하면 “예술”은 “문화” 가운데 특히 한정된 일부분을 나타내는 개념이 된다. 여하튼 국가기본법 제17조a의 규정은 그 제정경위로부터 명확한 것같이 예술진흥에 관련한 사회적 요소가 가지지 않는 자유권보장의 규정이며, 그곳에서의 “예술”의 해석이 연방의 예술진흥법의 대상이 되는 “예술”의 해석과 직접 결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규정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에 불과하다.

적인 진흥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당해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것이어야 하는 점이 열거되고 있다(동조동항).

즉, 이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술의 성과 또는 기획이 위의 세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률에 의거한 연방에 의한 진흥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거꾸로 그 이외의 예술의 성과·기획은 이 법률이 정하는 연방의 진흥대상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법률에서는 연방에 의한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의 성과·기획으로서 한 지역의 관심사를 초월하여 또한 오스트리아 연방전체로서 지원하여야 할 이익을 가지는 것, 적어도 하나의 주의 영역내에서만 관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을 열거함으로써 진흥대상을 한정하여 연방과 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조성 기타 진흥시책이 연방과 주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문화에 관한 권한을 둘러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상의 의문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⁴²⁾

(3) 주요내용

① 법률의 목적

연방예술진흥법 제1조제1항에서는 예술이 가져오는 실로 다양한 성과가 생활의 질향상에 기여한다는 연방의 인식을 언급한 다음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에 관하여 그 창작(Schaffen) 및 전달(Vermittlung)의 면에서 진흥을 행하여야 할 책무를 연방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이 진흥의 책무를 가지는 “예술”이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의 문화진흥의 대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를 한정

42) Esther M. Pecht, a.a.O., S.62. 또한 동서의 지적에 의하면 연방에 의한 예술진흥이 행해지는데 있어서 연방이외의 재원(자치단체 및 주에 의한 재정지출 또는 예술을 지원하는 사적부문의 자금)으로부터의 조성만으로는 예술상의 성과를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이 당해 예술프로젝트를 진흥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보충성의 원칙(der Grundsatz der Subsidiarität)이 고려된다고 한다.

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 창작 및 전달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도의 연방예산법(Bundesfinanzgesetz)에서는 예술진흥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상응하는 예산이 미리 계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연방예산으로부터의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출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분에 의한 예술지원을 촉진하도록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등 제도적 기반의 정비 또는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도 연방이 그 실현에 노력하여야 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예술진흥을 행하는데 즈음하여 연방은 모든 주민이 예술에 친숙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합과 아울러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가의 생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제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제2항).

② 진흥의 대상

법률 제2조제1항 각호는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에 관련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법적인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예술”개념이란 무엇인가라는 곤란한 논의를 가능한 한 회피하고,⁴³⁾ 연방의 역할을

43) 독일기본법에서는 제5조제3항에서 정신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의 하나로써 “예술 및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의 자유의 기본권은 “예술의 자유보장과 아울러 기본법 제5조제3항은 문언 및 의미에 따르면 우선 첫째로 객관적인 예술영역의 국가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는 가치결정적인 원칙규범을 포함한다. 그 규정은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자에게 개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BVerfGE 30, 173, 188). 그런데 기본법 제5조제3항 자체는 예술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판례 및 학설의 지배적 견해는 예술의 개념의 실제적 내지 성질적 이해에 입각하고 있다. 그 의미내용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다. 즉, “예술적 활동의 본질(Wesentlichkeit)은 자유로운 창조적 조형(schöpferische Gestaltung)으로서 예술가의 인상, 경험, 체험이 특정의 형태의 언어표현을 매개로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것이며, 예술적 창작은 제1차적으로는 전달(Mitteilung)이 아니라 표출(Ausdruck)이며 나아가 예술가의 개인적 인격의 가장 직접적 표출이다”라고 언급하고(BVerfGE 30, 173 ; 31, 229 ; 67, 213), 예술의 자유는 단순히 예술적 활동(창작의 영역)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술에 특유한 사상인 작품과의 만남에 있어서 사물필연적인 예술작품의 제공 및 보급

한정하고 있다. 그곳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문학, 연극, 음악, 조형 예술, 사진, 영화 및 비디오의 창작물과 새로운 실험적(experimenteller) 형식의 예술의 창작 또는 위에 열거한 기존의 예술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형식의 예술의 창작(제1호), 이들 예술의 공표(Veröffentlichung), 상연(Präsentation), 기록작성(Dokumentation) 등 예술의 전달과 관련한 활동(제2호), 작품 및 기록의 보존(제3호)등이다.

다만, 다른 연방법이 진흥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예술에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진흥대상이 될 수 없다(제2조 제3항). 여기서 대상이 되는 예술은 각개별지역의 관심을 초월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연방차원에서 진흥하는데 상응하는 질을 가진 혁신적인 특징(innovatorischen Charakter)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제2항). 이 경우 다른 연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잘츠부르크음악 제기금법, 연방영화진흥법 등이다. 또한 진흥의 대상을 열거한 법 제 2조제1항제1호에는 새로운 실험적 형식의 예술의 창작 또는 기존의 예술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형식의 예술창작이 열거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법 제1조제2항은 예술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즈음하여 자유롭고 관용적인 정신을 가지고 특히, 동시대의 예술(zeitgenössische Kunst, 현대예술)에 관하여 그에 반영된 정신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그 방식이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의 진흥에 특히 의지를 두는 모습을 명확히 하고 있다.⁴⁴⁾ 이 제1조제2항의 규정과 함께

(효과의 영역)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BVerfGE 30, 173, 189). 여기에서 파악되고 있는 예술의 개념은 예술적 창작, 예술활동이 객관화된 것으로서의 예술 작품, 예술작품의 제공 및 보급의 세가지 점을 그 요소로 하고, 이들 예술영역에 있어서 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헌법상의 예술개념은 가치중립적인 것이므로 미학에 의거한 예술개념의 관념적인 이해에 의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Wolfgang Knies, **Schranken der Kunstfreiheit als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 München 1967, S.142ff).

44) 국가기본법(StGG) 제17조a의 “예술의 자유”에서 “예술”의 개념과 관련하여 Theo Öhling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점을 고려하는데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살펴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새로운 실험적 형식의 예술(neuer experimenteller Kunstform)”, “기존의 예술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형식의 예술”에 관해서도 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이 상정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법 제2조제4항은 그러한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영역에 있어서 창작 또는 공표·실연의 진흥을 위하여 당해 예술이 가지는 의의에 상응한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의 진흥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예술진흥의 방법을 규정한 제3조제1항에서는 예술작품의 구입을 행하는 경우에는 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할 것(제2호),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작품의 제작을 연방이 발주할 것(제6호)을 열거하여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의 진흥에 대한 배려를 규정하고 있다.

있어서 창작자인 예술가의 주관적 의도에 착안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적 통념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서 기본권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평균적인 일반시민의 의향에 따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평균적인 일반시민의 상식으로부터 벗어난 전혀 새로운 예술의 경향이나 아웃사이더적 작품이야말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본법 제17조a에서 규정하는 “예술의 자유”보장은 일반시민을 도발하고 충격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확실히 이러한 작품이야말로 특히, 헌법상 권리보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aaO., S.389). 이 논의는 국가기본법 제17조 a의 “예술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연방의 예술진흥법의 해석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법률에서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이 왜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별도의 해설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양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표·전시에도 곤란을 수반하고 그 결과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중이 소수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들 관중이 당해 예술에 접촉할 기회도 제약된다. 일반적으로 친숙한 종류의 예술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대하여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작품에의 대가를 얻을 기회도 감소하는 한편 한층 자금의 점에서 곤궁함을 겪게된다. 그러므로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에는 특히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③ 진흥의 방법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예술진흥을 행하는데 있어서 채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즉, 개별예술창작의 기획(Projekt)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및 물자의 제공(제1호), 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한 작품의 구입(제2호), 이율 또는 분할상환의 면에서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에 의한 금전대부(제3호), 금전채무를 지는 자에 대한 연부상환금, 이자 또는 신용대출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조금교부(제4호), 특히 외국에의 유학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급부(제5호),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작품의 제작의 발주(제6호), 특출한 예술상의 성과(hervorragende Künstlerische Leistung)를 대상으로 한 연방의 서훈, 상금등의 수여(제7호) 등이 있다.

여기에서 최초로 개별 예술창작의 기획(Projekt)이 자금 및 물자의 공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이 법률은 개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진흥(이른바 프로젝트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컨대 특정한 예술가나 예술관련시설의 활동을 일정기간에 걸쳐 지원하는 진흥방법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급부되는 장학금(제5호)이나 수여되는 상금(제7호)에 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이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각주등으로부터 수여되는 상금에 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된다(제3조제3항).

기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예술상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이 설치하는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무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허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연방은 언제라도 당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술품전시시설에 의한 예술작품의 구입에 있어서도 그 구입이 오스트리아전체의 예술상의 이익(gesamtösterreichischen Kunstinteresse)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제3조제4항).

④ 진흥을 위한 일반적 요건

법 제4조에서는 연방에 의한 예술진흥이 행해지는데 있어서의 일반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자금 또는 물자의 공여를 수반하는 연방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연방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항). 연방에 의한 예술진흥이 행해지는데 있어서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이 없이는 예술창작프로젝트의 개시 또는 완성이 불가능하며, 또한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이 제공된다면 적어도 재정면에서는 당해 프로젝트의 성취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의 제공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연방의 자금을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도되고 있다.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을 얻으려는 자는 예술창작프로젝트에 요하는 자금 또는 물자의 전부를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물자의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⁴⁵⁾ 또한 연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법률에 의거한 연방으로부터의 지원 외에 가능한 한 별도의 연방법에 의거한 연방으로부터의 지원, 각주 기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 또는 사적 부문으로부터의 지원 등도 얻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제3항).

이와 같이 이 법률에서는 연방에 의한 진흥을 행하는데 즈음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가능한 한 다른 지원주체로부터의 자금 또는 물자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연방이 부담하는 물자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함과 아울러 다양한 지원주체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얻도록 이를

45) 필요한 물자의 전부를 연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지원을 얻으려는 자 자신이 다른곳으로부터 조달하도록 하는 방식에 관한 구체적 부담의 비율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촉진하는 시스템을 창출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의 지원이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적 부문으로부터의 지원을 얻음으로써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행정이 담당하는 역할을 경감하려는 점도 있다.⁴⁶⁾ 나아가 이 방법에 의하면 지원을 받는 자는 연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자금·물자의 점에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게 때문에 예술의 창작에 있어서 스폰서인 연방의 의향에 의하여 어떠한 압력이 작동하려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쉽게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법률에 의거한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이 외의 다른 지원을 얻는 때에는 이 법률에 의거한 연방으로부터의 보조금액등의 결정에 즈음하여 그 점이 고려된다(제3항).

제4조제4항에서는 이 법률의 규정이 개인에 대한 지원제공의 청구(individuellen Anspruch)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가 언급되어 이 법률의 규정으로 예술활동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점은 국가기본법(StGG) 제17조a의 규정이 신설된 때 초안중에서 예술진흥에 관한 사회권(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의회에서 가결에 필요한 다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던 점이 상기된다. 각주의 문화진흥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지원의 청구권을 인용하지 않는 규정은 현시점에서 제정되어 있는 모든 주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⑤ 진흥을 위한 계약의 조건

법 제5조제6항은 이 법률에 의거한 예술진흥을 하려는 경우에 지원을 받는 자와 연방간에 진흥과 관련한 제반조건에 관한 계약(Ver-

46)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으로부터의 지원(메세나등)이 거두는 역할이 현재에서는 매우 적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사적부문으로부터의 예술진흥을 위한 지출액은 동국가내에서 예술진흥에 사용된 연방, 주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출총액과 비교하면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trag)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률에 의거한 연방의 지원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연방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와 연방간에 필요한 제반조건등을 정한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계약중의 제반조건등은 신청된 예술창작프로젝트의 특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연방의 자금의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한 교부를 가능하게 하도록 정한다. 이들 목적에 적합한 조반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연방에서는 표준계약모델이 작성되어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연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즉, 1)연방으로부터 교부된 지원을 위한 자금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를 받는 것(검사방법은 장부, 서류의 검사 또는 작품제작 등의 현장에의 출입검사에 의한다). 2)연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3)정해진 기간내에 지원을 받은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연방에 보고하는 것 등이다(제5조제2항).

연방으로부터의 지원이 금전의 대부형식으로 행해진 경우에 있어서 지원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유가 원인이 되어 계약대로의 변제가 곤란하게 되거나, 대부된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면제하지 않으면 예정된 예술창작프로젝트를 성취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지원방법을 대부(Gelddarlehen)에서 증여(Geldzuwendung)로 변경할 수 있다(제5조제3항). 연방에 의한 지원대상이 된 예술창작프로젝트의 주된 부분이 지원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성취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비하여 연방과 지원을 받는 자간에 미리 체결된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즉, 1)일정한 요건하에 증여된 금전 또는 교부된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자가 연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2)대부금의 범위내에서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는 연방으로부터의 계약해지의 통지에 의하여 본래의 기한보다 일찍 변제기한을 도래시킬 수 있는 점, 3)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일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때에는 미변제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다는 것 등이다(제6조).

⑥ 제3자를 매개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진흥

법 제7조에서는 연방에 의한 예술진흥이 효율적으로 행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자인 사인이 연방의 명의 및 재정부담하에서 예술진흥과 관련한 사무(특히, 보조금의 배분)를 연방에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에 대신하여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Rechtsträger)와 연방간에 권한의 위임을 필두로 하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1항).

이와 같이 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교부에 즈음하여 제3자인 사인을 매개시키는 것은 금전등의 공여, 배분의 결정에 관련한 책임을 분산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시에 매개하는 사인을 다원화하면 예술진흥을 둘러싼 연방의 직접관여가 결과적으로 초래될지도 모르는 압력을 회피하고 예술활동의 자유와 자율, 또는 국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⁴⁷⁾ 이 경우 계약은 체결에

47) 이러한 진흥의 수법에 의하면 예술진흥에 즈음하여 연방은 제공하는 자금의 분배에 관하여 제3자인 사인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개재시킬 필요한 사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그 한에서 사적부문이 연방정부에 대신하여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는 사인에게 행정사무의 일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관해서만 보면 연방은 자금을 제공하는 직접상대방(진흥대상이 되는 자)와의 사이에서도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형식상으로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방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연방과 각주의 입법 및 집행의 권한을 정한 동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사권의 주체로서의 연방 및 각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예술진흥에 즈음하여 연방이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이 경우 연방은 법적으로 사권의 주체로서 취급된다)에도 연방헌법이 연방과 각주간의 권한배분을 여하히 규정하고 있는가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권의 주체(계약당사자의 일방)인 연방의 법적지위가 연방헌법상의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이른 사유와 함께 제10조에 규정하는 연차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

⑦ 예술진흥에 관한 지침

법 제8조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술진흥담당 책임자가 이 법률에 의거한 연방의 예술진흥의 실시에 즈음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상세에 관하여 조성지침(Förderungsrichtlinien)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을 정하는데 있어서 당해 책임자는 예술진흥에 관한 심의회에의 자문을 거침과 아울러 연방재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제5조에 규정하는 계약(연방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와 연방간에 체결되는 계약) 중의 제반조건의 상세에 관해서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제2항).⁴⁸⁾

⑧ 예술진흥에 관한 심의회

법 제9조에서는 개별예술분야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예술진흥담당의 책임자가 심의회(Beiräte) 또는 심사위원회(Jurien)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설치여부는 임의적이다). 이 경우 당해 심의회등의 위원에는 각 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심의회는 사실상 이미 1970년대부터 설치되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이 제9조의 규정은 이들 심의회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다.

⑨ 예술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법 제10조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술진흥담당책임자로부터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국민의회에 대하여 예술지원의 영역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권한배분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48) 현재 이 조성지침(Richtlinien des Bundeskanzleramtes für die Gewährung von Förderungen nach dem Kunstförderungsgesetz : Förderungsrichtlinien)은 연방수상청에 의하여 2004년 6월 1일자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jährlichen Kunstberich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연방의 예술진흥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⑩ 인지세의 면제 및 시행일

법 제11조에서는 이 법률의 규정에 직접 의거하여 작성된 문서에 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법률의 각조항의 시행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⑪ 법률을 소관하는 연방정부의 기관

이 법률에서는 지원신청(제4조제1항), 보조금의 배분등을 위임함으로써 국가와 예술가등과의 사이를 중개하는 사인이 연방과 체결하는 계약(제7조제1항), 예술진흥에 관한 지침설정(제8조), 예술진흥에 관한 심의회의 설치(제9조), 예술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제10조)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소관관청으로서 연방교육·예술·스포츠부장관(bundesminister für Unterricht, Kunst und Sport)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제정후에 행정각부의 재편이 몇차례 실시되어 현재에는 연방교육·예술·스포츠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중의 담당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1986년 연방행정조직법 제16조a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방행정조직법이 개정되어, 연방행정부서의 소관사무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 연방법에서 연방행정부서의 소관사항에 관련한 규정은 당해연방행정조직법의 개정내용에 상응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개별 법률규정에 관하여 실제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정된 것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률의 규정중에 연방교육·예술·스포츠부에 관한 부분은 현재 실제로 예술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진흥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관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이 법률을 소관하고, 예술진흥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곳은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 제Ⅱ국(예술국)이며,⁴⁹⁾ 그 책임자는 연방수상청의 예술·미디어담당 정무차관(Staatssekretät für Kunst und Medien)이다. 따라서 법률중의 연방교육·예술·스포츠부는 연방수상청의 예술·미디어담당정무차관이다. 현재 연방교육·학술·문화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는 연방이 설치하는 도서관 및 미술관, 기념물보호, 예배, 교회에 관련한 기금등을 소관하고 있으며, 이 소관사항은 대개가 연방헌법 제10조에 연방의 소관사항으로 열거된 문화행정에 관련한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연방교육·학술·문화부에는 연방수상청 제Ⅱ국이 이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예술에 관한 연차보고서(Kunstbericht)⁵⁰⁾와 별도로 문화에 관한 연차보고서(Kulturbericht)⁵¹⁾를 발간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연방부서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 처	소 관 사 항	비 고
연방수상청 제Ⅱ국 (예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 예술, 건축, 디자인, 패션의 진흥 · 음악 및 행위활동의 진흥 · 영화, 미디어예술, 사진의 진흥 · 법적 문제의 검토 · 예산관리 및 통제 · 문학 및 출판관련사항 · 외국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문화교류 	

49) 이 부서는 1990년에 당시의 연방교육·예술부에 설립된 조직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되었다. 현재 연방의 예술진흥법외에 연방예술진흥기여금법, 연방영화진흥법도 소관하고 있다.

50) <http://www.bundeskanzler.at/DesktopDefault.aspx?TabID=3738&Alias=kunst>

51) http://www.bmbwk.gv.at/kultur/bm/kulturberichte/kulturbericht_2003.xml

부 처	소 관 사 항	비 고
연방수상청 제II국 (예술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훈 · EU와의 문화관련 협력, 오스트리아연방극장협회 · 지역적 문화진흥 및 문화센터, 복합문화활동의 증진, 학제적 프로젝트 	
연방수상청 제V국 (헌법지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관련 법제의 해석(방송법, 사영라디오법, 키블 및 인공위성방송법 등) · 새로운 미디어 및 인터넷관련 법적 문제의 협조 	
연방교육 · 학술 ·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문화재수집 · 기념물보호, 예술유산의 보호, 국제협력(UNESCO) · 국립도서관 · 비엔나 Court Orchestra · 영상도서관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민속예술 · 나치시대의 만행에 의한 문화재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연구센터 · 과학, 교육 및 예술부문에서의 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 협력
연방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간 및 다자간 문화문제 ·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원 · 해외 오스트리아 도서관 · 오스트리아 연구소 해외5개 지국 	
연방경제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의 육성 · 영화에 관한 양자간 협정 	

2. 주의 문화진흥법 개관

(1) 성립배경

우선 주의 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일반적인 동기로서는 주가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주 스스로가 명확히 선언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있다. 1970년대초부터 각주에서는 지역아이덴티티의 형성의 필요성과 시민과 예술가의 문화적 욕구의 분출에 의하여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정부에서는 문화문제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 있었으며, 이에 문화진흥을 주의 소관사항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관계되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임박하였던 사정이 있었다. 또한 주와 연방정부간의 정치적 긴장관계도 문화진흥법의 제정배경에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사회당이 연방정부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당시 사회당이 사회주의적 문화개념을 내세우고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한 문화정책을 전개하면서 보수적인 문화개념과 문화가치에 대하여 집중적인 비판을 가한 것이 각주에서 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각주 가운데 문화진흥법을 가장 일찍부터 제정한 Vorarlberg주(1974년 제정)와 Tirol주(1979년 제정)는 전통적으로 국민당의 아성이라고 일컬어진 보수적인 주였다. 사회당정권에 의한 문화정책의 전개는 이들 주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들 주는 문화적 고유성과 자치를 연방정부로부터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를 우려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당시 문화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침예한 영역이 되었고 개인, 역사적 진화, 지역의 전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었으므로 개별 주에서는 이를 강하게 의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각주는 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역내에서 문화생활을 구축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우선적 권리, 권한을 법적 기반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1980년대이후에 문화진흥법을 제정한 각주에서는 문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의식하여 법적인 기반을 설정하였다기 보다는 사회전반에 걸쳐 문화의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주의 문화행정담당자가 문화행정의 확고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진흥영역의 입법화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2) 주요특징

각주에서 성립한 문화진흥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주의 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의 의미를 다른 인간의 생활영역과 마찬가지로 평등권을 향수하는 표현의 형태로서 위치하고 있다. 주는 문화를 “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넓게 이해하여 학술 등과 지역 및 전통적인 관습 및 실천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 학술과 문화의 다양한 내용이 동등하게 취급되어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둘째, 어느 주에 있어서도 문화진흥법의 채택에 이르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분야로서 잠재적으로 매우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논의를 넘어 예술적 및 문화적 표현의 자유, 다양성을 위한 법적 보장을 규정한 주의 문화진흥법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모든 주의 문화진흥법이 조성, 진흥영역을 전통적인 예술문화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평가된다.

셋째, 모든 주의 문화진흥법에서는 일반적인 자금조성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 자금조성에 관한 규정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문화진흥법의 제정은 민주화, 공동결정 그리고 문화조성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예술형태의 표현을 강력하게 진흥할 뿐 아니라 이른바 문화의 중개자와 일반적인 국민이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것이 권리로서 인정되게 되었다.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마지막으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주의 문화진흥법은 연방주의에 따라 개별 주의 문화적 자치를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주요내용

연방차원에 앞서 문화진흥에 관한 법을 가장 선도적으로 제정한 곳은 1974년의 Vorarlberg주 문화진흥법이다. 그 후 Tirol(1979년), Salzburg주(1980년제정, 1998년개정), Burgenland주(1980년)에 이어 현재는 Wien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⁵²⁾ 이들 법률은 개별주 내에서 주에 관련하는 문화활동을 진흥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개인·법인의 주관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는 주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문화진흥법을 “예술진흥법”으로 지칭하여 대상을 예술에 한정하는데 대하여 주의 경우 폭넓은 문화개념을 채용하고 있으며, 문화의 내용도 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주의 모든 문화진흥법에서는 진흥의 원칙, 범위 그리고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문화진흥에 관하여 거의 모든 주의 법률에는 진흥의 조건 또는 원칙으로서 “문화활동의 독립, 자유, 다양성”이 명기되어 있으며 주의 진흥사업이 문화활동의 내용적 개입이 될 수 없도록 유보를 두고 있다. 나아가 모든 주에서는 주의 문화진흥사업에 관하여 권고를 부여하는 이른바 “문화자문위원회(Kunstkommission, Kultursenat, Kulturbeirat, Kulturgremium)”를 구성하고, 위원의

52)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Wien주에서도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연방수상청의 견해에 관하여는 Republik Österreich vertreten durch den Bundeskanzler Kunstangelegenheiten, **Weissbuch zur Reform der Kulturpolitik in Österreich**, Wien 1999, S.127.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전반에 제정된 일부 주의 문화진흥법에서는 관련예술가와 행정의 민주적 공동결정에 관한 독립성이 높은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규정되는 경향에 있다. 또한 1979년에는 Tirol주에서 처음으로 문화진흥법에 규정된 “문화연보(Kulturberichte)”가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Vorarlberg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의 문화진흥법에서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즘음에 예술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1985년에 제정된 Steiermark주 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활동과 관련하여 “Steiermark주의 문화적 시야를 넓히는 범위내에서 다른 주, 지역, 국가와의 협력”이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보다 넓은 시야에 입각한 문화진흥의 방식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치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주내에 머무르는 보장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한 점도 주목된다.

주와 게마인데의 권한배분에 관하여는 각각이다. Tirol주, Niederösterreich주, Steiermark주의 경우에는 게마인데에 관한 언급은 없고, Vorarlberg주는 게마인데가 자발적으로 진흥하는 정책이 주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지역의 전통적 실천과 관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Burgenland주, Salzburg주 및 Oberösterreich주에서는 게마인데에까지 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법률에 적합하는 한에서 게마인데가 스스로의 영역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Salzburg주와 Oberösterreich주의 문화진흥법에서는 재정적 진흥의 조향이 있다.

(4) 문화진흥법의 구성체계

각주의 문화진흥법은 연방예술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주로 조성대상의 범위, 조성의 필요조건, 절차적인 기준 등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① 조성대상의 범위

문화진흥법의 조성대상범위는 매우 넓다. 최초로 문화진흥법을 제정한 Vorarlberg주는 그 범위를 “성인교육, 학술, 예술, 지역의 전통적인 측면(Volks- bzw. Erwachsenenbildung, Wissenschaft, Kunst, Heimatpflege)”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후의 Tirol주는 이들 영역을 더욱 상세하게 “미술, 건축, 음악·음악교육, 문학, 실연예술(darstellende Kunst), 영화·사진, 문화재보호, 박물관, 전람회, 과학·연구, 성인교육, 도서관, 문화적 건축”의 14개 항목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된 Burgenland주는 그 범위를 20개 항목으로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문화기관·시설의 운영, 문화육성, 페스티벌, 사진, 기념식전(Gedenkfeiern und Feste), 문화교류, 미디어, 창조적 여가활동(Schöpferische Freizeitgestaltung), 민속예술(Volkskunst), 학술도서관·자료관”의 영역까지 넓혔다.

이러한 열거방식의 경향은 1985년에 제정된 Steiermark주나 Oberösterreich주에도 발견된다. Steiermark주는 새로이 “비디오”와 “구시가지 및 경관의 보호(Landesstraßen und Landesbrückenbauten)”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주내의 문화협회·기관의 존속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도 추가하고 있다. Oberösterreich주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화디자인, 기초적인 문화조사, 전자미디어, 전위적인 문화적 표현(avantgardistische Klturarbeit)”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열거방식에 대하여 Salzburg주와 Niederösterreich주는 별도의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조성대상영역을 넓게 표현하고 있다. Salzburg주는 조성대상영역을 “예술, 민속문화, 일상문화, 학술, 교육”으로 규정하는 한편 나아가 문화활동을 통한 개인의 창조적 발전, 현대적인 문화적 성과, 문화재의 보호, 문화성과와 문화기관이 일반

공중에게 도달가능한 것으로 하고 이 관점에서 공중이 문화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iederösterreich주에서도 조성대상분야를 개별적으로 명확화하지 않고 조성할 가치가 있는 활동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조성은 현대적인 문화활동의 진흥과 기록, 과거의 문화적 성과의 보호에의 기여, 현대 및 과거의 문화적 성과에의 공중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 대해서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제는 문화영역이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후반에 제정된 Niederösterreich주와 1998년 개정된 Salzburg주의 경향을 보면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문화영역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면에 착안하여 규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주의 문화개념의 판단을 그때그때 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② 조성의 필요조건

Vorarlberg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문화진흥법에는 조성을 위한 필요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그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Tirol주와 Burgenland주에서는 조성의 필요조건으로서 ①조성을 위한 신청의 제출, ②프로페셔널인 것의 증명, ③지급된 자금의 적절한 사용이 열거되고 있다. 다른 주의 진흥법에서는 나아가 ①조성은 신청자가 기도하고 있는 활동이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자금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②어떤 조건하에서 적용은 비용평가 및 재정계획에 의하여 보완된다. ③신청자는 최량의 때에 그 자금의 이용이 행해졌다는 증거를 작성하여야 하고, 나아가 주에 의한 재정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이 요구를 완성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된 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성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또는 조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국가적 급부를 요구하는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IV.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것이 아니므로 상기에 언급한 조건이 있다고 하여 확실히 조성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은 조성을 행하는 측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거친후 나아가 조성할 가치있는 사업을 인정하기 위한 상세한 심사기준(Richtlinien)이 내부규칙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행정차원에서 존재하는 경우와 문화위원회등 자문위원회에서 조성을 위한 지침을 상세히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내부기준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③ 절차적 기준

연방차원에서도 주차원에서도 문화진흥법에서는 개별 자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의 임명방법이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나, 실질적인 조성채택의 절차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가 어떠한 차원에서 결정과정에 관련하고 있는가라는 점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원회의 관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주의 문화행정담당자 차원인지 주정부의 문화담당직원 차원인지 또는 부서의 장의 차원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주차원에서는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필요에 따라 주의 문화담당직원, 주의 상급정부직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 내지 위원수명에 의하여 소집된다. 일반적인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며 단순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⁵³⁾

53) 오스트리아 영화진흥법(filmförderungsgesetz 1980, 1998개정)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영화기금(Österreichischer Filmförderungsfond)의 “선택위원회(Auswahlkommission)”의 경우, 8인의 위원과 사무국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위원은 선거를 하거나 의사를 제안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모든 조성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 기관이 유일한 조성결정기관이라는 점이 각주에 의한 위원회방식의 조성채택과는 다르다. 여기서는 기관이 허용되지 않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신청의 채택은 부결된다. 절차규칙은 사무국에 의하여 결정되고 4인의 구성원은 관련부처에서, 2인은 노동조합과 연방통상부에서, 그리고 5인은 오스트리아영화산업대표가 된다.

IV. 결 론

예술진흥을 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헌법상의 규정을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부문이 시행하는 각종 진흥시책에서 일반적인 원칙인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을 부합시켜 나가는 방법으로서는 기준과 절차를 애매하게 둘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만큼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공개와 설명책임은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각국에서 예술문화에 관한 법률이 증가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조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행정내부의 각종 지침 등과 같이 내부적 규칙에 의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화하는 의미는 행정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 또는 예술에 관한 논의를 널리 공론화하고, 정부에게 그 책무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실제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정에 의한 재량적 시책이나 기존의 조직과 재정을 승인하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진흥을 위한 보다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문화정책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된다면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스트리아의 문화법제는 이른바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는데 모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①모든 문화진흥법제에서 예술·문화적 활동의 독립, 자유,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화권을 인정한 점, ②연방예술진흥법에서 예술의 진흥과 그 증개를 국가사무라는 점을 확인한 점, ③국가 및 주에게 예술

IV. 결 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④문화진흥에 관하여 민간과 다른 공공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설정한 점, ⑤특히 오늘날 동시대적으로 새로이 창조되어가고 있는 현대예술의 진흥에 주목하고 있는 점, ⑥예술가의 생활의 발전을 위하여 물질적 및 사회적인 조건의 개선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⑦연방정부와 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연방차원에서의 진흥대상과 주차원에서의 진흥대상을 명확히 한 점, ⑧각각의 진흥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부문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이 획기적이다.

공적자금을 예술문화에 투입하는데 관한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투명성을 높인다는 시점에서 중요하다. 어떠한 공적 자금이 준비되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결정과정을 거쳐 분배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행정의 설명책임과 정보공개가 주시되고 있는 오늘날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의 문화진흥정책은 주요예술의 국유화 등을 거친 후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조성을 행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법제를 정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성효과의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문화, 예술의 개념 및 영역이 법적으로 불확정적인 것과도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모든 국가행정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 질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중시한 위에 문화정책의 발전을 지향하여 일련의 문화진흥법을 제정한 것의 의미는 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개개인의 생활차원에 있어서 문화의 향유와 창조에의 욕구가 사회전반에 폭넓게 확산되는 한편 이러한 변화에 호응하는 모습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술·문화의 진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메세나(mécénat : 민간기업에 의한 예술문화의 지원), Philanthropy(사회공헌)이라는 용어가 급속히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으며 예술·문화활동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차원에서 독자적인 문화행정이 전개되고, 문화행정의 이론과 실천이 축적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우리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법제분야의 대응은 이론적 측면뿐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지체되고 있는 현상에 있다. 문화가 법학의 영역에서 논의의 대상이 한편 국가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233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법률은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념과 정책의 빈곤을 안고 있다. 또한 국가의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그 대상범위가 좁고 지역사회나 생활문화의 충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성숙이나 욕구의 다양화를 지향하지 않고 보조금이나 기금설치 등 소극적인 정책에 치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내실은 문화적인 생활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인 환경의 실현에 있으며, 문화는 21세기의 사회에 있어서 최상위의 개념으로서 인식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생활전체의 문화예술에의 지향과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옴과 아울러 문화와 생활공간의 긴밀화 및 그에 의한 일상생활공간의 미적 정서의 형성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또한 문화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품위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며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일환을 이루며 멀티미디어사회의 기본적인 실체를 형성한다.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국가로서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이 국가의 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위치하도록 문화예술관련법제도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1. 연방예술진흥기본법(1988.2.25 공포)

제 1 조(예술진흥의 책무)

(1)연방은 예술이 가져오는 실로 다양한 성과를 의식하고 생활의 질향상에 예술이 기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입각하여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의 창작활동 및 그 보급·전달을 진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매연도의 연방예산법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상응하는 예산이 미리 계상되어야 한다. 나아가 예술의 창작활동에 대한 민간의 재정적 지원 및 조직적 지원에 관련하는 제반조건의 기반의 개선과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예술을 진흥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에 관하여 자유롭고 관용적인 정신으로서 정신적인 변화 및 그 다양성에의 배려가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예술의 진흥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주민이 예술에 친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예술가의 생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물질적인 제반조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진흥의 대상)

(1)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의한 진흥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문학, 연극, 음악, 조형예술, 사진, 영화 및 비디오와 새로운 실험적인 형식의 예술 또는 위에 열거한 종래의 각 예술분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형식의 예술의 창작
2. 작품의 공개, 상연 및 기록작성
3. 작품 및 기록의 보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하는 대상의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

(2)이 법률에 의한 진흥은 자연인 또는 연방을 제외한 법인에 의한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가져오는 성과 또는 책정된 기획으로서 특정의 지역에만의 이해를 초월한 관심에 의거하는 것 외에, 같은 성과 또는 기획으로서 범례로서의 역할을 거두는데 상응하는 것, 혁신적인 본질을 가지는 것 또는 통일된 진흥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실시하는 것이 인정된다.

(3)이 법률에 의한 진흥은 다른 연방법이 진흥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예술활동의 분야에 관하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의 진흥에 즈음하여서는 당해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창작 또는 공표, 실연을 위하여 예술의 진흥에 충당되는 자금 중에서 당해 예술이 가지는 의의에 상응하는 배분액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진흥의 방법)

(1)이 법률에 의한 진흥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별 예술창작의 기획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및 물자의 제공
2. 작품의 구입(특히,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을 대상으로 한다)
3. 이율 또는 분할변제의 점에서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에 의한 금전대부
4.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연할부상환금, 이자 또는 신용대부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조금 교부
5. 장학금 지급(특히, 외국유학에 즈음한 지급)
6. 동시대의 예술(현대예술)작품의 제작발주
7. 탁월한 예술상의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 의한 서훈 또는 장려를 위한 표창 또는 포상금 내지 상금수여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것 외의 금전 또는 물자의 제공

(2)예술상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이 설치하는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3)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장학금 및 동조제7호에 규정하는 상금에 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과세면제의 특례조치는 제1항에 규정하는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상의 성과로서 질적 및 수준의 면에서 비견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주의 법률을 근거로 수여되는 장학금 또는 상금에 관하여 적용함과 아울러 국내의 예술진흥관련기관 또는 국제적인 기관이 예술상의 성과에 대하여 수여하는 장학금 또는 상금에 관하여도 제1항에 규정하는 진흥의 대상이 되는 예술상의 성과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4)연방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미술품전시시설에 의한 예술작품의 구입에 관하여 당해 구입이 오스트리아 전체의 예술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 4 조(진흥을 위한 일반적 요건)

(1)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열거하는 진흥의 방법에 의한 지원의 제공은 연방교육·예술·스포츠부에 대한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2)지원은 예술창작의 기획을 개시 또는 완성하는 것이 지원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나, 일부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지원의 제공이 있으면 당해 계획이 재정면에서 볼 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경우에 한해서 행한다. 지원을 얻으려는 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여 자기부담으로 금전 또는 물자를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을 얻으려는 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자기부담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에는 지원을 얻으려는 자가 동일한 계획을 위하여 연방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적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위한 자금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별도로 행하거나 행할 예정의 가부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얻었거나 얻어질 예정에 있는 지원의 자재는 연방의 자금으로부터의 지원액의 사정에 즈음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실시 예정인 지원조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원에 사용하는 자금을 관하여 가능한 한 연방정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을 통하여 지원조치의 실시에 즈음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원자가 될 수 있는 사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지원조치에 요하는 자금을 분담할 것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지원을 얻으려는 자에 대하여 사인인 지원자의 관여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원조를 하여야 한다.

(4)이 법률은 개인에 의한 지원제공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 5 조(진흥을 위한 계약의 조건)

(1)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열거한 진흥의 방법에 의한 지원의 제공에 즈음하여 지원을 얻으려는 자와의 사이에 연방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의무 및 제반조건을 포함한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한다. 이 의무 및 제반조건은 신청된 계획의 특질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자금의 신속하고 간편한 교부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전항의 계약에 있어서는 지원을 얻으려는 자가 연방정부의 기관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의 검사 또는 현장에의 출입검사를 통하여 교부된 지원을 위한 자금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지원을 받은 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보고를 할 의무를 질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보고에 관하여는 지원액 또는 기획의 태양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요구하는 것을 요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상세한 것은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3)지원이 금전대부의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 지원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후발적 사정의 원인으로 대부분은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원을 위한 진흥의 방법을 증여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예정된 계획의 성취가 불가능한 때에는 진흥의 방법을 대부분으로부터 증여로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에 관하여 그 주요한 부분이 지원을 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계약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금전 또는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거나 대부분금의 범위내에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후 본래의 기한보다 조기 변제기간을 도래시킴과 아울러 변제일 이후 오스트리아국립은행이 정하는 금리(기준금리)로 당해시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에 3%가 가산된 연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붙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간접적인 진흥)

(1)연방의 자금으로 행하는 진흥의 범위내 특정한 것에 관하여 당해 진흥의 특질에서 보아 일정 범위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당해 협력을 통하여 연방의 자금사용에 있어서 비용삭감, 경제적 효율성, 목적 적합성의 점에서

개선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연방자금에 의한 진흥에 관하여 연방의 명의 및 재정부담에 의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즉응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주체(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 분담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당해 부담을 시키는 법적 주체와의 사이에 체결할 수 있다.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주체는 가능한 한 간접적인 진흥의 실시를 위임하도록 하고, 기획의 비용면에서 협력을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예술에 관한 연차보고서 중에 기재됨과 아울러 체결에 즈음한 이유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8 조(진흥에 관한 가이드라인)

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이 연방법에 의거한 진흥의 제공에 있어서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상세에 관하여 미리 심의회의 자문을 거침과 동시에 연방재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 9 조(심의회)

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개별 예술분야에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 및 자문에 의거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 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등의 위원에는 각예술분야의 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술에 관한 보고서)

연방교육·예술·스포츠장관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국민의회에 대하여 예술진흥의 영역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접 이 연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문서류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시행)

이 연방법의 시행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공화국수상. 다만, 연방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제3조제3항,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하는 규정외의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공화국수상

제13조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주의 문화진흥법

(1) Tirol주 문화진흥법(Gesetz vom 16 März 1979 über die Förderung der Kultur in Tirol, LGBl. Nr.35/1979)

<p>법률의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조로 구성
<p>원칙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는 주민을 위하여 문화활동의 진흥에노력하여야 한다(제1조제1항) - 문화활동이란 생산하거나 재생산의 형태(produzierenden und reproduzierenden Formen)를 취한 인간의 정신적 및 창조적 성과이며, 단순히 필요불가결하고 유익한 것을 넘어 이를 통하여 형성된 가치가 육성되는지의 여부, 이해를 촉진하거나 심화하는 것이다(제1조제2항) - 진흥은 문화적 활동의 독립, 자유 및 다양성을 수호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진흥은 수범자에게 스스로의 이니셔티브와 자조적으로 자극을 받기 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진흥은 근검(Sparsamkeit), 경제성(Wirtschaftlichkeit),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에 비춘 자기능력에 배려하면서 실현하여야 한다(제4조제4항). - 진흥의 보장에 관한 법적청구권(Rechtsanspruch)은 없다(제4조제5항) - 수범자(Förderungsempfänger)는 그가 진흥되는 기획의 실시예 필요불가결한 전문적 조건을 지니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주정부는 이 법률의 의미에 있어서 진흥의 보장에 이르기까지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p>범 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예술(bildende Kunst), 건축, 음악, 음악교육, 문학, 실연예술(darstellende Kunst), 향토색·민속진흥(Heimat und Brauchtumpflege), 영화·사진, 문화재보호, 박물관, 전람회, 학술·연구, 성인교육, 도서관, 문화적 건축
<p>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인쇄비보조, 장학금·표창·진흥상·공로상수여, 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구분야에 있어서 위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구입, 문화적 행사의 개최, 문화적 출판물의 편집, 영화, 슬라이드, 사진, 음을 기록하는 매체의 제작, 공적건축물·시설에의 자금공여, 공적인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비의 일부로 예술적인 장식을 행함

(2) Salzburg주 문화진흥법(Gesetz vom 11. Dezember 1997 über die Förderung der Kultur im Land Salzburg, LGBI. Nr.14 1998)

<p>법률의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조로 구성
<p>원칙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은 인간의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다. 문화진흥은 동시대의 문화적 창조, 과거의 문화유산의 진흥으로부터 성립한다. 진흥은 그 가운데 행해져야 하며 현재, 미래, 존속해 가야하는 문화적 행사의 유지에 공헌하여야 한다(제1조제1항) - 문화적 창조는 자유이다. 진흥은 이 자유의 보장에 공헌하여야 한다. 진흥에 있어서는 문화활동의 독립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조제2항) -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진흥은 문화적 성과 및 시설에 주민이 도달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활동에의 이해를 자각시키고 사회적·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조제3항) - 주는 주와 그 주민을 위하여 문화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주예산에서 주의 예산에 있어서 다른 요건 및 주의 재정여건에 상응하여 충분한 자금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 자금의 적당한 부분은 현대의 문화적 창조에 사용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 게마인테도 스스로의 지역의 문화활동을 진흥한다. 게마인테에 의한 문화진흥은 고유의 소관사항이다.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게마인테에 상응하여 행해진다. 게마인테의 건축물에 관한 주의 진흥자금은 공적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게마인테가 건축물의 예술적 조형물을 들어가는 경우에만 지급된다(제2조제2항) - 이 법률에 의한 문화활동의 진흥을 통하여 다른 공적인 진흥의 담당자 및 민간의 문화진흥에 의한 문화진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른 진흥의 담당자와의 진흥조치의 조정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 Salzburg주극장(Landestheater), Salzburg Mozartem Orchesters 및 Salzburg페스티벌의 사항은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제5항) - 진흥의 보장에 관한 법적청구권은 없다(제2조제6항)

부 록

범 위	- 예술, 학술, 민속문화, 일상문화, 교육
방 법	- 콩쿠르(wettbewerben)의 공모 및 실시, 주문의 위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의 취득, 명예상·진흥상 및 장학금의 수여, 문화증개를 위한 문화적 개최, 강연, 세미나, 시설, 문화활동 및 문화적 개최를 고무하고 조언하며 조직에 관한 원조를 행하며 현물공여를 하는, 이자·이윤·채무에 대한 조성금 및 채무인수, 문화보고서 및 문화적 출판물의 간행, 문화 및 그 증개영역의 기초적 연구, 공적인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비의 일부로 예술적인 장식을 행함

(3) Burgenland주 문화진흥법(Gesetz vom 4. Dezember 1980 zur Förderung der Kulturellen Tätigkeit, BGBl. Nr.9/1981)

법률의 체계	- 5개조로 구성
권 칙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는 인간의 노력의 총체이며, 사회에 있어서 생활의 조건과 형태를 윤리적, 미적 및 인간적인 가치에 따라 형성하거나 개량하는 것이다(제1조제1항) - 주는 주와 그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동시대적인 문화창조를 진흥하며 문화활동을 통하여 인격의 창조적 자기개발을 촉진하며, 주민이 문화적 성과 및 시설에 도달가능하게 되도록 하며, 문화활동에 관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모든 노력을 지원하며 사회를 더욱 문화적으로 한다(제1조제2항) - 문화적 창조는 자유이다. 문화진흥은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헌을 의미한다(제1조제3항) - 게마인테의 문화진흥은 고유의 소관영역이다. 진흥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이 지역적 영역에서 배려되는 한 게마인테는 적당한 문화진흥을 행한다(제1조제4항) - 진흥의 보장에 있어서 주는 문화활동의 독립, 자유 및 다양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수범인은 그가 진흥되는 기획의 실시에 필요불가결한 전문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p>원칙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은 문화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에 대하여 또는 사람내지 시설의 일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제4조제3항) - 진흥의 보장에 관한 법적 청구권은 없다(제4조제4항) - 이 법률에 의한 문화활동의 진흥을 통하여 다른 공적인 진흥의 담당자 및 민간의 문화진흥에 의한 문화진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다른 진흥의 담당자와의 진흥조치의 조정에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제5항)
<p>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개최, 문화시설기업, 조형예술, 도서관, 실연예술, 문화재보호, 성인교육·문화육성, 페스티벌, 영화·사진, 향토색·민속진흥, 문화전람회, 문학, 미디어, 박물관, 음악, 창조적인 여가형성, 민속예술, 학술·연구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장학금·표창·진흥상·공로상의 수여, 이자·채권에 대한 조성금 및 채무인수, 콩쿠르의 공모 및 실시, 문화적 기획에 있어서 조언 및 원조, 문화적 및 학술적 출판물의 편집, 영화, 슬라이드, 사진, 음을 기록하는 매체의 제작, 문화, 학술 및 그를 매개하는 분야의 기초적 연구, 공적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공적인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에서는 건축비의 일부로 예술적인 장식을 행함

(4) Steiermark주 문화진흥법(Gesetz vom 18. Juni 1985 über die Förderung der Kultur in der Steiermark, LGBl. Nr.87 1985)

<p>법률의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조로 구성
<p>원칙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는 주와 그 주민을 위하여 문화활동의 독립, 자유 및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진흥하여야 한다. Steiermark의 문화적 의도가 개방된 목적이 있는 한 다른 주, 지역 및 국가와 공동하여 사업을 분담한다(제1조제1항) - 문화활동이란 정신적, 창조적, 생산적 및 재생산적인 성과를 말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창조된 작품의 진흥으로 이해를 불러일으키고 심화하는 것이다(제1조제2항)

부 록

원 칙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의 보장에 관한 법적청구권은 없다(제2조제1항) - 주의 건적에 상응한 관련예산으로 행하는 진흥은 근검 및 합목적성의 원칙의 배려하에 행하여야 한다(제2조제2항) - 진흥은 수범인의 이니셔티브와 경제적 자기능력을 자극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수범인은 문화생활에 관련하는 활동을 행하는 자연인 및 법인이며 특정의 계획 또는 일반적인 문화활동이 보호될 수 있다(제2조제3항) - 진흥은 문화적 성과 및 시설에 주민이 도달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문화활동에 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제5항)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예술, 건축, 음악, 문학, 실연예술, 성인교육, 도서관, 문화재·구시가지·경관보호, 박물관, 전람회, 영화, 비디오·사진, 향토색·민속진흥, 문화기관, 창조적 여가형성, 문화적 건축의 설치·운영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장학금·표창·진흥상·공로상의 수여, 예술가에의 주문위탁, 문화적 작품구입, 문화적 개최등의 지원, 문화적 출판물간행의 지원, 영화, 슬라이드, 사진, 음을 기록하는 매체의 제작, 문화적 기획에 있어서 조언 및 원조, 문화활동을 위한 공적건축물·시설·작업장의 용의, 문화 및 그 증개자영역의 기초연구, 공적인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비의 일부로 예술적인 장식을 행함, 주내의 문화협회·문화기관의 존속과 계속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비

(5) Oberösterreich주 문화진흥법(Gesetz vom 2. Oktober 1987 über die Förderung der Kultur in Oberösterreich, LGBl. Nr.77 1987)

법률의 체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및 12개조로 구성
원 칙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는 주 및 주민을 위하여 문화활동을 조성 진흥한다(제1조제1항)

<p>원 칙 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자가 사회에 있어서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권리를 지원하고 지역적 문화격차의 시정을 도모한다(제1조제2항) - Oberösterreich주는 특히, ①동시대적 작품, 새로운 형태의 문화생활의 발전의 진흥, ②현재의 자기를 인식하기 위한 과거의 문화적 유산의 진흥을 행하고 ③주민이 이들 성과 및 시설에 도달가능하도록 하며 그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며 ④창조적 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사회의 문화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제공의 확대의 모든 가능성, 그 경우에 특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관하여도 언급되어야 한다(제1조제3항) - 게마인데의 문화진흥은 고유한 소관영역이다. 진흥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이 지역적 영역에서 배려되는 한 게마인데는 적당한 문화진흥을 행할 수 있다(제1조제4항) - 진흥에 의하여 주내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예술창조적, 문화창조적 자연인 및 법인이 보호될 수 있다. 진흥은 문화영역에 있어서 특정의 계획 또는 사람과 시설의 일반적 문화활동에 대하여 결정한다(제3조제1항) - 주는 문화활동 및 예술창조의 독립·자유 및 다양성을 유지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 진흥의 보장에 관한 법적 청구권은 없다(제3조제3항) - 이 법률에 의한 문화활동의 진흥을 통하여 다른 공적인 진흥의 담당자 및 민간의 문화진흥에 의한 문화진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다른 진흥의 담당자와의 진흥조치의 조정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4항)
<p>범 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예술·디자인, 음악·실연예술, 문학, 건축, 문화재보호·경관·구시가지 보호, 학술·성인교육·기초적 문화연구, 민속·향토색진흥, 전자미디어·사진·영화, 인습적이 아닌 전위적인 예술, 예술창조의 중개가능한 문화적 이벤트와 프리젠테이션
<p>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도·조언, 콩쿠르의 실시 및 문화영역에 있어서 주문의 위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의 구입, 문화적 성과에 관한 장학금·표창·진흥상·공로상의 수여, 문화적 개최 및 문화시설의 통합에 향한 행동의 실시 내지 조성, 문화 및 그 중개자영역의 기초연구, 문화적 출판물의 간행, 정보 및 미디어, 문화적인 것과 만남의 장소로서의 문화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문화적 개최를 위한 공적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

방 법	문화적 활동 및 목적을 위한 조직에 관한 원조 및 현물대여, 문화적 활동 및 목적을 위한 기부금 또는 반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 공적인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비의 일부로 예술적인 장식을 행함
-----	---

(6) Kärnten주 문화진흥법(Gesetz vom 7. November 1991 über den Beitrag des Landes Kärnten für die Kultur, LGBI. Nr.4 1992)

법률의 체계	- 13개 조문으로 구성
원 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는 그 주민을 위하여 문화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제1조 제1항) - 문화창조는 자유이다. 이 법률에 의한 조치는 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한다. 사람 및 집단은 생산되거나 재생산된 방법으로 초래되는 문화적 성과를 고무되도록 한다(제1조 제2항) - 주의 문화진흥은 ①문화적 활동을 통한 창조적 자기개발 ②공동체 가운데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권리 및 ③동시대의 문화적 창조를 진흥하고 ④일반적으로 주민이 문화적 성과물 및 시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며 ⑤과거의 문화유산을 현재로부터 미래로 보존하며 ⑥슬로베니아민족집단의 유입을 포함하여 다른 종족의 유입에 의한 Kärnten의 문화계층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⑦문화 교류에 의한 공개·결합을 포함한 Kärnten의 문화적 공간의 유지 및 시간에 상응한 수복을 행한다(제1조 제3항) - 게마인테의 문화진흥은 고유의 소관영역이다. 진흥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이 지역적 영역에서 배려되는 한 게마인테는 적당한 문화진흥을 행한다(제1조 제4항) - 주는 진흥을 행하는데 있어서 문화활동의 독립, 자유 및 다양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최대한 투명성 및 균형성에 배려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 진흥은 진흥의 수범인이 진흥되는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적 조건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p>원칙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은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문화창조를 행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진흥은 문화영역에 있어서 특정의 계획 또는 사람 및 시설의 일반적 문화활동에 대하여 결정한다(제3조제4항) - 진흥의 보장에 관한 법적청구권은 없다(제3조제4항) - 이 법률에 의한 문화활동의 진흥을 통하여 다른 공적인 진흥의 담당자 및 민간의 문화진흥에 의한 문화진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다른 진흥의 담당자와의 진흥조치의 조정에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제5항)
<p>범 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예술, 건축, 음악, 문학, 성인교육, 도서관, 문화제·구시가지·경관 보호, 박물관, 전람회, 영화·비디오·사진, 향토색·민족문화, 문화적 건축, 창조적인 여가형성,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p>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장학금·표창·진흥상·공로상의 수여, 예술가에의 주문위탁, 문화적 작품구입, 문화적 개최등의 지원, 문화적 작품·출판물의 지원, 문화적 영화·비디오·사진·회화·음을 기록하는 매체의 조성, 문화활동을 위한 공적 건축물·시설·작업장의 용의, 문화 및 그 중개자영역의 기초연구, 공적인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비의 1%를 예술적인 장식에 사용, 주전반에 걸친 문화생활에 중요한 단체 및 시설에 관해서는 그 존속 및 활동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운용을 위한 필요한 기본액의 보장

(7) Niederösterreich Kulturförderungsgesetz 1996 LGBl. 5301-0, 90/96. 1996-07-18

<p>법률의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조로 구성
<p>원칙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는 개인의 창조성 및 사회의 관용에 의거한 개방된 프로세스(offener Prozeß)이며 인간의 생활조건, 행동양식을 중개하는 것을 통하여 형성된 미래에 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제1조) - Niederösterreich주는 주내에서 행해지거나 내외에서 주를 과시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진흥한다(제2조제1항)

<p>본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ederösterreich주는 문화진흥을 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다음의 원칙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양성에 있어서 문화적 사업의 독립과 자유. 주내의 어느 지역에서도 모든 자는 문화적프로세스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 판단능력이 있는 공중의 필요에의 배려, 내외에 있어서 문화적 발전의 공개. 다양성에 배려한 문화프로세스의 부분을 이루는 현대의 예술작품에 대한 적절한 진흥, 오스트리아의 다른 주 또는 외국의 지역과의 공동. 문화진흥의 개념적 방침의 작성, 문화진흥은 협력관계에 의하여 행한다(제1조제2항) - 진흥의 보장에 관한 법적 청구권은 없다(제3조제6항) - 진흥의 수범인은 Niederösterreich에 있어서 문화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자연인 및 법인이며 문서로서 신청을 한다 (제5조제1항) - 주정부는 조성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진흥방침에 배려하여야 한다. 조성요망에 특별성이 있는 경우 조성계약이 연장되어야 한다(제5조제2항) - 주정부는 담당부서의 요구에 있어서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의 결정을 포함한 진흥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①진흥방법, ②Niederösterreich주의 문화적 독자성을 확고한 것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조건, 보장 ③진흥을 위한 조건, 기간 ④절차 ⑤진흥을 위한 조건, 의무(제5조제3항)
<p>범 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내에서 제작되는 작품, 문화의 해석과 재생산, 문화유산의 보존, 동시대적, 혁신적 예술, 국제적인 문화발전, 지역의 문화발전, 주수도에 있어서 문화프로세스, 주내지역에 있어서 문화프로세스, 문화프로세스에 있어서 자립과 창조성, 문화기업의 전문화와 경제화
<p>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비물질적 형태의 조성, 지도·조언·정보제공, 문화적 활동을 자극하는 조성, 기존시설을 이용한 공동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조언, 개최의 실시, 문화 활동의 작품, 개별영역에 관한 발전계획의 작성, 문화과학적 조사의 위탁, 공중의 정보, 주문의 위탁, 장학금을 통한 약간의 재능의 진흥, 재정적 조성, 보조금, 문화상등, 인프라의 정비, 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의 획득, 민간의 문화진흥 강화, 공적공간에 있어서 작품의 진흥

(8) Vorarlberg주 문화진흥법(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Kultur, LGBL. Nr.4/1974)

법률의 체계	- 7개조로 구성
원칙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는 주와 그 주민을 위하여 문화활동을 진흥할 책무가 있다(제1조제1항) - 문화활동(Kulturelle Tätigkeit)이란 인간세계의 정신적 및 창조적인 실현과 형성이며, 단순한 필요불가결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하여 형성된 가치가 육성되는지의 여부, 이해를 촉진하고 탐구하는 것이다(제1조제2항)
범위	- 성인교육, 과학, 예술, 지역의 전통관련의 보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Beiträge), 장학금(Stipendien), 표창(Ehrengaben), 진흥상(Förderungspreise), 주의 시설에 상응한 지도(Führung von entsprechenden Landeseinrichtungen), 행사(Veranstaltungen), 주문의 위탁(Vergabe von Aufträgen), 예술적·역사적 기타 문화적 의미를 지닌 대상물의 취득(Erwerb von Gegenständen von künstlerischer, geschichtlicher oder sonstiger kultureller Bedeutung)